

2021년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2021. 1.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작물, 유통

## 4-1 원예작물 시설장비



세부사업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예산 (백만원)	19,336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폐열의 이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사업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과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공기열냉난방시설 등) 설치 및 에너지진단 컨설팅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또는 시·군 자치구 ○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지원내용	○ 국고 20~60%, 지방비 20~30%, 용자 10~30% (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지열·지중열·폐열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 공기열 냉난방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절감시설 * 공기열 냉난방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1,000㎡이상 30,000㎡ 미만  * 에너지진단 컨설팅 국고 100%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8월까지 시·군에 제출							
지원대상 선정	○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재원구성 (%)	국고	20~60	지방비	20~30	용자	10~30	자부담	10~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103,190	83,865	62,755	56,251			
	국 고	30,304	27,273	17,385	13,920			
	지방비	28,053	22,572	17,640	16,185			
	용 자	24,789	19,797	16,345	15,563			
	자부담	20,044	14,223	11,385	10,583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최은철 주무관 정민웅		044-201-2256 044-201-2259		
한국농어촌공사		에너지사업부		부 장 정찬조 차 장 양원모		061-338-5371 061-338-5372		

## 1. 사업대상자

- ①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총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시·군이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②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③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④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①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또는 재배 예정\*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 신규 온실 설치 예정자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 ②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 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돼지·닭·오리 사육 또는 사육예정\*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완료
    - \* 신규 축사 설치 예정자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 ③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농업인의 교육·연구 및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 농업인과 결합되는 채소·화훼류 등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④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

- 고정식 재배시설에 과거 농진청, 농식품부, 산자부 등의 지원 사업으로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또는 폐열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이 해당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결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우선지원요건**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자격과 일반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시장·군수는 지원자격과 일반지원요건을 충족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일반지원요건

### <공통사항>

- 냉난방시설 설치 시 반드시 기존 난방시설을 존치 또는 보조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정전 등으로 인한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보조난방시설은 지원 불가)
- 시설물 화재보험(공제)에 가입하여 화재·낙뢰 등 피해에 대비(권장)
- 확보 부지(규모·위치 등),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단열기준 등이 사업추진에 적정한지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시 확인(지열·공기열·폐열시설 설치 시)

## 가. 사업부지 확보

- 지열(개보수 포함)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 단, 부득이한 사유(예: 부부, 직계가족, 동일 경영체 소속 등)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사업신청자는 소유·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는 부지에 한해 신청 가능(주민 등의 시설 설치 동의서 등 증빙자료 제출)
    - \* 토지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시 수평밀폐형은 온실 재배면적의 160% 이상, 수직 밀폐형과 수직개방형(SCW)은 온실 재배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업신청자가 사전에 확보 완료
  - 별도의 매설 공간이 없는 온실은 온실 내부에 굴착장비가 투입되어 지열교환용 파이프 매설작업이 가능해야 함 \* 작물 재배·수확기간 조정 가능여부 확인
-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 시 사업신청자는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 이송관로 부지 등을 사전에 확보 완료

### <지원 제외대상>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 개발될 예정인 지역 내 토지("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반드시 확인)

## 나. 사업비 확보

- 지열(개보수 포함)·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사업비(자부담·국고융자)를 이미 확보했거나, 사업자 선정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신용조사서 등 증빙자료 제출)

## 다.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

###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 면적 1,000㎡ 이상
  - \* 단, 단동형 파이프식 온실은 면적이 0.3ha 이상이며, 내재해형 기준을 충족하고,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변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만 가능
- 버섯, 인삼 등을 재배하는 원예특작시설 : 연면적 600㎡ 이상
- 무창계사 : 30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오리사 : 5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분만돈사, 무창임신돈사 : 1천 마리 이상 사육 사업장

### ○ 공기열 냉난방시설

- 농업인·농업법인별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 : 1,000㎡ ~ 30,000㎡
- \* 단, 지원설비의 용량은 최대 20,000㎡ 기준 용량 이하로 제한

## 라. 고정식 재배시설 단열기준(지열·공기열·폐열 시설만 해당)

### ○ 농작물 재배온실 (아래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

-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 2중 보온커튼과 수막시설 설치

### ○ 패널구조형 원예특작시설

- 무창계사·돈사·오리사, 버섯재배사 등 원예특작시설의 패널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측벽 및 천장 포함) 또는 동등한 단열성능(열관류율) 이상

## 마. 재배품목

### ○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을 선택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작물로의 변경은 불가)
- \*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별첨 2) 고려,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전문가 의견 반영·결정

## 바.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개보수

### ○ 용량증설 : 최대부하용량의 90% 미만으로 지원된 시설

- \* 적용대상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 성능개선 : 하자관리기간(준공 이후 3년) 종료된 시설 또는 유류대비 에너지 비용 절감률\*이 50% 미만인 시설

\* 현재 냉난방비용(연간 전력요금) / 유류난방 가정 시 난방비용

\*\* 적용대상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전기·유류 난방기 지원 제외

시설 구분	지원 범위
지열·폐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폐열 이송관로,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 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시설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li> <li>*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li> <li>· 축산시설은 내부 공급관(덕트) 설비공사 추가(기존 환기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연계를 위한 공사는 제외)</li> </ul>
지열·폐열 (성능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자관리기간 종료 이후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보수(교체)를 통해 회복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li> <li>* 사후관리기간(5년) 이내 주요장비는 회복 불가능한 파손·고장을 제외하고 보수만 가능(교체 불가)</li> </ul>
목재펠릿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외부 : (공통)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설치 인건비, (온수) 축열 탱크(필요시)</li> <li>· 온실내부 : 급수분배기,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등</li> </ul>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공기열 냉난방시설

시설 구분	지원 범위
공기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배관시설, 팬코일유닛, 제어시설, 축열조 탱크 등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li> <li>*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li> </ul>

\* 총사업비 500만원 미만으로 지원되는 다겹보온커튼 또는 보온덮개는 중요재산에서는 제외되나, 시·군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보관·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에만 지원 가능

####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사업기간(지열·폐열 신규설치) : 2년(1년차 50%, 2년차 50%)
- 지원비율

구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에너지절감시설		20%	30%	30%	20%
공기열냉난방시설		40%	20%	30%	10%
신재생 에너지시설	목재펠릿난방기	30%	20%	30%	20%
	신재생에너지시설	60%	10%	20%	1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폐열 예외)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 5. 지원 기준단가

< 공통사항 >

-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 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3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
-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가.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신규설치

-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 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 부하용량(kW) × 적용단가
- 기준단가

설비형식		기준단가	히트펌프 적용기준
지 열	수직밀폐형	1,638천원/kW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 제품 사용
	수평밀폐형	1,260천원/kW	
	개방형(SCW형)	1,508천원/kW	
폐 열		1,280천원/kW ~ 1,520천원/kW	
공기열	공기 대 공기(공급)	617천원/kW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 제13조에 따라 신고 된 제품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공기 대 물(공급)	865천원/kW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인증 시험기관에서 ‘농업용냉난방기 검정방법’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 \* 폐열 재이용시설은 열원이송거리에 따라 적용단가를 조정 가능
-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를 위한 계측시스템(전력량계, 부하량 및 열량측정장치) 구축을 위한 설비 반영 시 기준단가의 5%까지 가산 가능
- \* COP(성적계수) : 에너지효율의 지표(투입전력 대비 생성 열에너지의 비율)

### 나.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개보수

- 용량증설(지열·공기열·폐열)
  - 지역별 시설 부하용량(kW)\* 기준 대비 부족한 용량을 지원
  - \* 온실 부하계산결과를 기준하여 부족한 용량(히트펌프 정격 난방용량 기준) 또는 지열교환기 전산해석 결과 부족한 용량(지열고갈 등으로 인한 용량 증설)
  - 사업비 : [시설 부하용량(kW) - 기보급 시설용량(kW)] × 적용단가
- 성능개선(지열·폐열)
  - 과거 지열 냉난방시설 또는 폐열 재이용시설 보급 이후 시설물의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회복하기 위한 보수 및 교체 지원을 위한 실제 소요 사업비
  - 사업신청 시점에 실소요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매설부 등) 개략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

○ 기준단가

- 용량증설 : 지열 신규 설치 단가와 동일
- 성능개선 : 실소요 비용(개략사업비 306백만원/ha)

다. 목재펠릿난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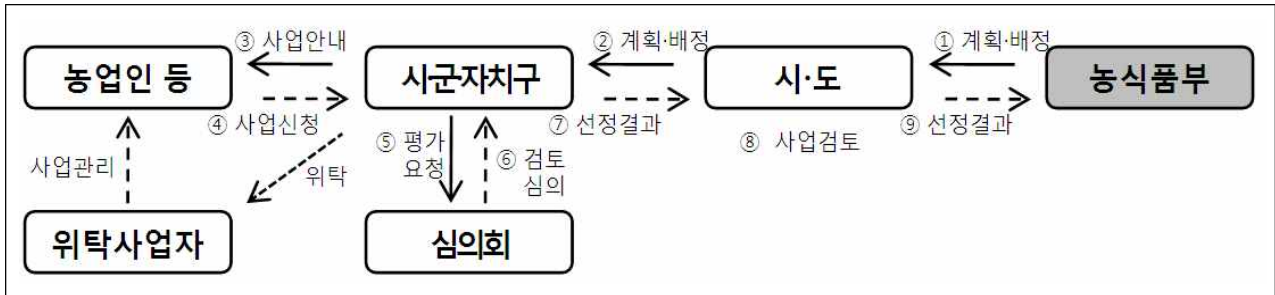
설비형식	지원내용
온수형·온풍형 난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www.kamico.or.kr)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펠릿 전용 난방기(열효율이 표시된 제품)’</li> <li>○ 난방기 열효율 : 온수 80%, 온풍 70% 이상 제품</li> <li>* 설치비 : 온수형 300만원, 온풍형 150만원 이하/661㎡</li> </ul>

라. 에너지절감시설(보온자재)

○ 기준단가

설비형식	기준단가	지원내용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향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li> <li>*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 커튼으로 지원 가능(보온율 기준 미적용)</li> <li>○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향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li> </ul>
	예인식·외부권취식 11천원/㎡	
	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5천원/㎡	○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보온덮개	2.5천원/㎡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제품 지원
배기열 회수장치		

\* 다겹보온커튼과 자동보온덮개의 기준단가 단위(㎡)는 설치되는 커튼 또는 보온덮개의 면적을 의미, 나머지 시설의 기준단가 단위(㎡)는 설치되는 온실의 면적을 의미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 1. 예비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현장조사 확인서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 첨부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전년도 10~12월)

#### 시·군

- 사업대상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1 또는 2-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신청(개보수 포함) 시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지원을 의뢰하여 조사 시행 후 현장조사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단,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요건은 미충족 시 조건부 예비사업자로 신청 가능\*)
- \* 추후 최종사업자 선정단계에서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1, 1-2)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1 또는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난방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
  -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 및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 용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 한국농어촌공사

- 시·군 요청 시 현장조사를 지원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전년도 7월~8월)

##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신청자 적격성 심사

사업시행기관(전년도 7~8월)

[선정위원회]

(시군구, 시도)  
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사업시행기관(전년도 9~12월)

[e-나라도움]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2월)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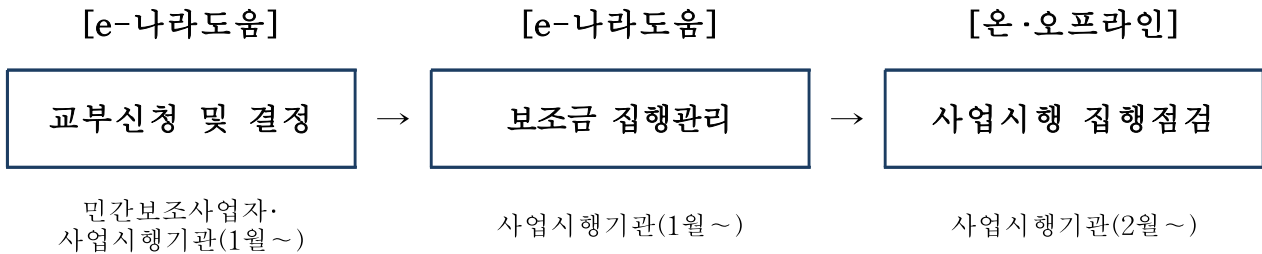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조건부 예비사업자의 경우 보고 시 지원요건 충족여부 입증자료 제출
    - \* 특히, 사업비 확보 요건 충족여부를 증빙자료 등 통해 반드시 확인
- 시·군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조건부 예비사업자의 경우 보고 시 지원요건 충족여부 입증자료 제출
    - \* 특히, 사업비 확보 요건 충족여부를 증빙자료 등 통해 반드시 확인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 자금배정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교부하고(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용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용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교부된 소요자금을 시장·군수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 자금집행

####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일괄 위탁사업의 경우 교부금을 위탁시행기관에 교부)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준공검사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준공 완료 보고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 승인
  - 위탁시행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한 경우 설계비용은 설계요율만큼 사업비에서 제외하여 비율에 따라 정산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등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3)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 ① 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연장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 한국에너지공단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시 시·도별 용자금 대출실적 제출
- 시설 준공 후 용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시·군에 사업비(국고보조, 용자, 지방비) 배정·교부를 요청하며, 국고용자 대출을 신청
-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용자금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용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4. 사업 시행 단계

###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 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제출
      -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총사업비 기준 물품구매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 가능
  -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 「지하수법」, 전기시설은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 기존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설원예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19년 이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전 시행한 온실 설치공사 실적을 인정
-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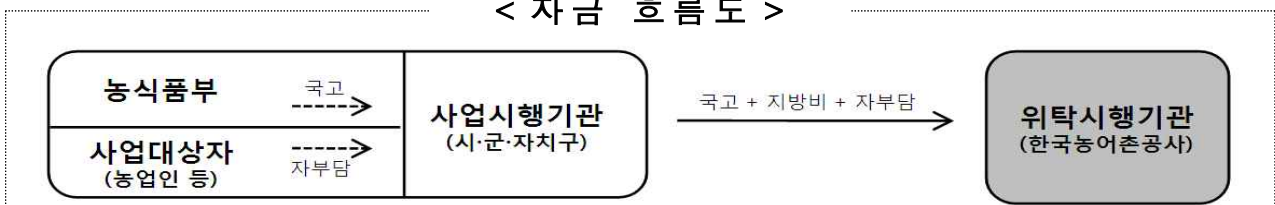
- 시장·군수는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원가계산서 등) 확인

- 시장·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 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 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단가계약)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 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12-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 지열·폐열·공기열 냉난방시설

- 기본방향: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지열 히트펌프’에 한하여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 직접구매 가능
  - \* 단, 지열 성능개선사업의 경우는 지자체 대행만 가능
  - \*\* 농업인 직접구매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제시
  - 지열·폐열 시설(신규 설치) 지원사업은 2개년도 사업(1년차 50%, 2년차 50%)으로 시행

#### < 자금 흐름도 >



##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대행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농업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 받고, 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함께 일괄 교부
  - ‘지열히트펌프’를 지자체 대행 구매 또는 농업인 직접 구매 시, 구매비용 및 경비(조달수수료 등)는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군에서 집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사항을 감독
-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관리·감독을 하고 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확인. 공사비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의뢰
    - \* 설계적정성 검토에서 확정된 내용은 변경 불가하며, 변경 시 설계적정성 검토 재의뢰
  - 설계도서에 특허 또는 신기술 등 독점적 실시권한이 포함된 경우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등 사업추진 방법을 검토하여 결정
    - \* 독점 배타적 기술이 포함되어 사업대상자가 시공사를 임의 결정할 수 없도록 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기간 중 사업시행을 적극지원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시·군으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이 직접 ‘지열히트펌프’를 구입할 경우에는,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및 사업자 상호간 협의

-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적정성 검토 및 시·군의 관리감독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운영
  - 사업 위탁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엔지니어링 사업비,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효율

(단위: %)

구 분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2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100억원이하
사업관리비	8.83	7.98	7.35	7.10	6.89	6.64

\* 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50% 적용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공사비가 대상액 중간에 있을 때의 효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계산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 준공 후 해당 시·군에 준공 완료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 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군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시·도(시·군)에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 의뢰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최저한계)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 나. 업무 추진단계



## 다. 단계별 업무 내용

###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시·군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소요 사업비 산출 및 사업에 필요한 현장조건 등을 확인
    -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토지이용계획원 확인)
    - 지열공 예정 위치의 입지조건 확인(기계실과의 거리, 주변 환경, 토지 확보 여부, 천공에 대한 민원발생 가능성 등)
    - 주변 500m 이내 타 지열설비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존재유무 확인하여 의견 제출
-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군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 2) 설계 단계

- 설계 완료 후에는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음(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사업대상자인 농업인(농업법인)을 상대로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 4) 시공 단계

- 도급공사 시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 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 업체를 통해 시공
- 시설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94호)」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기준에 의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의 여부확인(시공계획서 검토·확인, 시공상세도 승인, 현장시공 확인 및 검측,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등 공사감독업무지침에 따른 시공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 안전관리, 하도급 관리 및 기술자 배치 확인
-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 안전관리 의무,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어 기성검사 요청 시 기성검사원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기성검사 실시

- 기성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 및 한국농어촌공사 공사감독업무지침, 시설공사검사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함

####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준공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 사업대상자 및 시·군 담당자, 사업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 입회하여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정산

#### 6) 하자관리 단계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지적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시공 등 조치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의함

- 하자보수 공사 완료 시 검사 실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검사 실시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 사업계획 변경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단,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사업비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 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5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이를 시·군에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 사업 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중도회수 사유로 보지 않음

##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분기별로 사업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0일 이내 회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 온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설비시설	준공일	7년	
▪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다겹보온커튼 등 소모성 기자재의 경우 중요재산에서 제외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준용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5)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 처분 승인 요청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회계연도 내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지속 추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 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 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며,
  -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 사업수행자(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 농협은행(농·축협)

- 대출취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중도회수 개시일을 시·군 등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의 명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 사업대상자

- 위탁시행사업 추진 시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 착수 가능시기를 명시한 소명자료를 시·군에 제출

##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도(시·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 Ⅲ

##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 1. 2022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22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1.3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부지, 용자실행 등 사전준비
  - 사업대상자 부지 소유 관계(임대차 등), 설치부지 적정여부, 가설계도면 확인, 농협은행 발행 '신용조사서' 구비(지역·품목농협 확인서 사용 불가) 등
  -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21.3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사업부지 및 사업자격 요건 확인, ~'21.9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21.12월) → 사업추진('22.1월~)

### 2. 202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1. 7~8월
- 신청자격 : '22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 '22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1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후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 [통합] 시설원에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input type="checkbox"/> 개인				단체( <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 <input type="checkbox"/> 농업회사,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 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지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축산	㎡	㎡	㎡	㎡	㎡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에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 시설	난방 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가온 방식	㎡	㎡	㎡	㎡	㎡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에 현대화	<input type="checkbox"/> 원예시설 <input type="checkbox"/> 화훼류				㎡				
			ICT 융복합 확산	<input type="checkbox"/>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신재생에너지	<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지열(성능개선) <input type="checkbox"/> 폐열, <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난방기			㎡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감	<input type="checkbox"/> 다겹보온커튼, <input type="checkbox"/> 보온덮개 <input type="checkbox"/> 순환식수막시설, <input type="checkbox"/> 공기열,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p>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ICT융복합 확산(컨설팅)사업 추진 시 자부담 납부에 동의합니다.</p>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p>○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p>												

< 첨부서류: 지열·폐열·공기열 사업신청자 >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 ③ 냉난방시설 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단, 시설물을 지자체로부터 임차한 경우는 가능)
  -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3. 임차농업인이 사업 신청 할 경우(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자에 한함)
  -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4. 냉난방시설 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 면세유 사용 확인서(농협은행 등) 1부.
6.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신용조사서 제출
7.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추가 첨부서류
  -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 ③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④ 최근 재무제표 1부.
8.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신용조사서, 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9.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10. 시설 설치 동의서(지열 등)

## 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 1. 일반현황

#### 가. 사업자 개요

사업종류	<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지열(성능개선), <input type="checkbox"/> 폐열, <input type="checkbox"/> 공기열(해당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사업자(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m <sup>2</sup>		시설재배규모	m <sup>2</sup>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 나. 보유시설 현황

기존 보유시설(형식/규모)						가온면적				경력	전기시설		
계					기타	계	온풍 난방	온수 난방	기타		현재 용량	인입 거리	비상 발전기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년	kW	m	kW

#### 다. 사업예정시설 현황

사업예정시설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기타시설장비	비 고
시설형태	면 적	기존·신규	생산시설	외피복재	내피복재		
	m <sup>2</sup>						

- \* 사업예정시설 : 아래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시설형태 : ① 벤로형유리온실(경질판 포함), ② 양지붕형유리온실(경질판 포함), ③ 비닐연동, ④ 비닐단동, ⑤ 기타
  - 기존·신규 : ① 기존 보유, ② 신규 설치
- \*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 아래 모든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생산시설 : ① 양액재배, ② 점적관수, ③ 자동환경제어, ④ 공정육묘장, ⑤ 환기시설
  - 외피복재 : ① 유리, ② PE, ③ EVA, ④ PO, ⑤ 불소수지, ⑥ PET, ⑦ PC, ⑧ PVC, ⑨ 외피복 1중, ⑩ 외피복 2중, ⑪ 외피복 3중, ⑫ 보온판넬 50mm, ⑬ 보온판넬 75mm, ⑭ 보온판넬 100mm, ⑮ 보온판넬 100mm 이상
  - <표기방법 예시> 외부 EVA+내부 PE 2중인 경우 : ②③⑪ 기재
  - 내피복재 : ① 다겹(2중)보온커튼, ② 알루미늄 증착커튼 1중, ③ 알루미늄 증착커튼 2중, ④ 부직포 1중, ⑤ 부직포 2중, ⑥ 부직포 3중
- \* 기타시설장비 : ① 예냉시설, ② 저온저장고, ③ 저온처리실, ④ 집하장, ⑤ 선별처리장, ⑥ 보광시설, ⑦ 선별기, ⑧ 운송차량, ⑩ 비고란 별도 기재
- <표기방법 예시> 축산시설 자돈대기사인 경우 : ⑩ 기재 비고란에 자돈대기사 OOm<sup>2</sup>

(2쪽에 계속)



(2쪽)

라.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 '20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8(A)						
	2019						
	2020(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8(A)						
	2019						
	2020(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 사업계획

가. 세부 사업내역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지열냉난방 시스템							폐 열 냉난방 시스템	실내열교환기유형				
계	면적	수평밀폐형				수 직 밀폐형		수 직 개방형	FCU	TUBE -RAIL	기타	
		지열교환기(○) 직관형	슬린 키형	시설 내부	시설 외부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 개보수(용량증설)

계	지열 냉난방시설			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수 평 밀폐형	수 직 밀폐형	수 직 개방형	공기대 공기	공기대 물	
	kW	kW	kW	kW	kW	kW

- 개보수(성능개선)

난방용량	성능개선						
	전체시설	히트펌프	배관교체	FCU	자동제어	지열교환기	기타
	식	대	m	개	식	공(m)	

- 공기열

공기열냉난방 시스템 선택				실내열교환기유형		
계	면적	공기대공기	공기대물	FCU	TUBE-RAIL	기타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나.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용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3쪽에 계속)

(3쪽)

다.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상세주소 기재)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m <sup>2</sup>	백만원	백만원		

라.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마릿수)	생산시기 및 과정				겨울철 최저기온 설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계	m <sup>2</sup> (마리)	월 순	월 순	월 순	월 순	℃

마.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수출품목	생산면적	연 차 별 수 출 목 표						수출국
		2022		2023		202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m <sup>2</sup>	톤	백만원	톤	백만원	톤	백만원	

바.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1)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 

2)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 
-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1) 농가 교육 및 현장지도, 평가회 개최계획 등

- 
- 

(4쪽에 계속)

(4쪽)

- 2)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 
  -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난방비 절감 효과

- 
-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 
- 

5.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 
- 

- 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별 사진(2매 이상) 1부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사업계획서

## 에너지절감시설·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사업자 개요

사업종류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감시설, <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난방기(해당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사업자(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m <sup>2</sup>	시설재배규모	m <sup>2</sup>	수출참여규모	m <sup>2</sup>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용자	지방비	자부담

나. 보유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영방법
명칭	설치연도					
		m <sup>2</sup>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품종별 비유·생산실적

\* '20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8(A)						
	2019						
	2020(B)						
	증감율(B/A)						100
생산량 (톤)	2018(A)						
	2019						
	2020(B)						
	증감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쪽에 계속)

(2쪽)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응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상세주소 기재)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4. 구 종합 검토의견

가. 시·도:

나. 시·군·구: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신청자(단체)명: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배 품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보조사업자)

1.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용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00%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교 부 목 적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보조사업자)는 「○○○」사업 추진 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일반공사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 다.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사. 사업시행지침서를 위반하는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 년 ○○월 ○○일



[별지 제5호 서식]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에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선정사업	<input type="checkbox"/> 시설원에현대화, <input type="checkbox"/> ICT융복합확산, <input type="checkbox"/>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유형	<input type="checkbox"/> 농업인, <input type="checkbox"/> 농업법인,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p>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 변경신청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p>					

[별지 제6호 서식] 현장조사 확인서

## 현장조사 확인서

신청자	사업신청자명			생년월일		(남/여)			
	법인	법인명							
		참여농가수		호		설립연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가온재배경력		년			
연락처	일반전화			팩스(FAX)					
	휴대전화			전자우편					
기존 시설 규모	생산시설	시설유형		계		기타			
		면적/마릿수		m <sup>2</sup> /마리		m <sup>2</sup> /마리		m <sup>2</sup> /마리	
		난방면적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난방방법	기종			온풍난방기( ), 온수보일러( ), 지열냉난방( ), 기타( )				
		난방연료		계		경유		중유	
		연간 사용량		<del>                    </del>		ℓ		ℓ	
		연간 사용액		백만원				톤	
	연간 사용액						kW		
	연간 사용액								
	난방기간		월 ~ 월( 일간)		동계최저 설정온도		℃		
부대시설 형식·규모						기타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지열(개보수) 보급설비	사업년도 (준공년도)		시행주체		총사업비		난방용량		
					백만원		kW		
수출 납품	품목명(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출국								
	수출시기		월 ~ 월		월 ~ 월		월 ~ 월		
참여연수		총    년간		계약업체					
신청자 재정 상황 (백만원)	자산								
	부채								
	연소득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사업 신청 내용	신청내용			지열·폐열·공기열·지열(개보수) 냉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설치장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사업신청 대상시설 (○)	기존·신규		기존시설( ), 신규설치완공(예정)일 :    월    일					
		자동화정도		완전자동( ), 반자동( ), 수동( )					
		시설유형						기타	
설치년도									

\* 지열(개보수)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및 사업비 산출서를 별도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성 검토(의견)서

## 사업성 검토(의견)서

1. 신청자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구역	지구	구역	지구

3. 지원요건 충족 여부

사업부지 확보여부	민원발생 가능성	재배시설 규모	재배품목
<input type="checkbox"/> 자가소유, <input type="checkbox"/> 장기임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동의서 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서 미확보)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input type="checkbox"/> 저온 작물, <input type="checkbox"/> 고온 작물, <input type="checkbox"/> 아열대 작물
사업비 확보 상황	구체적으로 기술		

4. 사업검토

구분	평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경영능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생산기술(능력)	◦경영 규모 ◦재배·경영실적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전력 ◦민원발생 가능성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시·군·구 농업기술센터소장/○○시·군·구청장 (서명 또는 인)

## [통합]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사업명: )

(단위: 천원)

시군	사업자명	농가수	재배품목	사업구분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내역	공정률	계		국고		응자		지방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						m <sup>2</sup>		%																

주1) 작성요령

가. 사업명: “시설원에현대화”, “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나. 사업구분

- 시설원에현대화 : 원예시설, 화훼류
- ICT융복합확산 : 복합환경관리, 단순환경관리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 스마트팜 종합자금(농협) : 온실신개축, 시설개선

다. 세부사업

- 시설원에현대화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ICT융복합확산 :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지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시설 등
- 스마트팜 종합자금(농협) : 철골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예냉시설, 저장시설, 선별시설, 피복시설 등

라. “주요추진내역”란은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마. “사업비집행”은 전월 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1. 금후 사업추진일정

- 
- 

2. 사업추진 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 
- 

3. 기타 참고사항

- 
-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군구명	단체명	대표자	농가명	주 재배작물	사 업 량															사 업 비															불용 사유
							사업구분					계 획					집행실적(정산)					다음해이월			불용			차근근	잔근근								
												세부사업	계획(A)	실적(B)	대비(B/A)	계	국고(C)	응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D)	응자	지방비	자부담	대비(D/C)	국고			응자	지방비	국고	응자	지방비			
												%																									
계							%										%																				

주1) 작성요령

- 가. “사업구분” : 에너지절감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구분 기재
- 나. “세부사업” :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등 기재
- 다. “주 재배작물” : 대표 품목명 1개 기재(예시 : 토마토, 오이, 백합 등)
- 라. “사업량” :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
- 마.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10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

(단위: 천원)

구분	회계 연도	시도명	시군명	사업 자명	생년 월일	사업비					포기·이월 사유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주1) 작성요령

가. “구분”: 포기, 이월 구분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11호 서식] 추진성과 보고서

## 지원사업 추진성과 보고서

1. 재배(사육·양식) 현황

시군명	성명 법인명	재배·사육 대상	시설유형	면적 (㎡)	재배·사육방 법	기간 (월일~월일)	생산량 (kg, 단, 분)

\* 인근에서 경유온풍기를 활용하는 대상시설과 비교하되, 인근에 없을 경우 시군>도>전국 평균 자료로 비교

2. 0.1ha당 수익성 효과

시군명	성명 법인명	총수량(kg, 단, 분)			上品 수량(kg, 단, 분)			수입(천원)			소 득(천원)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3. 0.1ha당 난방비 절감시설 및 효과

시군명	성명 법인명	구 분	외피 복재	내피 복재	난방 기간	기간 설정 온도	전 기		유 류	
							전기 소모량	비용	경유 소모량	비용
					월.일~ 월.일	℃	kW	천원	ℓ	천원
		사업장 인 근								

\* 외피복재 : ① 유리 ② PE ③ EVA ④ PO ⑤ 불소수지 ⑥ PET ⑦ PC ⑧ PVC ⑨ 외피복 1중 ⑩ 외피복 2중 ⑪ 외피복 3중 ⑫ 보온판넬 50mm ⑬ 보온판넬 75mm ⑭ 보온판넬 100mm ⑮ 보온판넬 100mm 이상

<표기방법 예시> 외부 EVA+내부 PE 2중인 경우 : ②③⑪ 기재

\* 내피복재 : ① 다겹보온커튼 ②알루미늄 증착커튼 1중 ③알루미늄 증착커튼 2중  
④부직포 1중 ⑤부직포 2중 ⑥부직포 3중

4. 교육 및 평가결과

시군명	교 육		현장지도		평가회개최		평가회 참석자 사업내용 만족도					
	횟수	인원	횟수	연인원	횟수	인원	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회	명	회	명	회	명	명					

5. 미흡한점 및 개선방안

시군명	미흡한점	개선방안

6. 사업 추진 단계별 사진

[별지 제12-1호 서식]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약내용	물품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제조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율		%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납품일자	. . . ~ . . .				
	납품장소					
기타사항						
<p>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p>붙임서류 : 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1부 2.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1부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1부 4. 규격 및 내용서 또는 산출내역서 1부(필수)</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지자체 계약담당공무원 (인) 또는 농업(법)인 계약상대자 (인)</p>						
물품내역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유지보수 기간

※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결정



[별지 제12-2호 서식]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연대보증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약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현장		
	지체상금율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	·
	착공연월일	·	·
	준공연월일		
기타사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 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p>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입의 계약 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p>불입서류 :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2.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3.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4. 설계서 1부 (필수)                  5. 산출내역서 1부 (필수)</p> <p style="text-align: right;">20 . . . . .</p> <p style="text-align: right;">지자체 계약담당공무원 (인)                  또는 농업(법)인 (인)                  계약상대자 (인)                  연대보증인 (인)</p>			

※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결정

## 사업자 선정기준표(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지 역	○○시·군·구	사업자명
주 소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1.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설치 (    ), 2.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    )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충족 (    )/미충족 (    )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미충족 (    )
조 사 항 목		배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특점
1. 자동화·현대화 정도 - 완전자동(5), 반자동(4), 수동(3), 인력(2), 시설낙후(1)		5   4   3   2   1
2. 내부 보온피복재에 의한 보온력 정도 <온실> - 다겹보온커튼+부직포(5), 다겹보온커튼(4), 부직포 2중(3), 부직포 1중(2), 내부보온피복 없음(1) <온실이외의 경우> - 단열판넬 100mm 이상(5), 75mm 이상(3), 75mm 미만(1)		5   4   3   2   1
3. 전기시설 설치 여건 - 기존용량 활용가능(5), 전기 거리공사비 거리 200m이내(4), 201~500m(3), 501~1,000m미만(2), 1,000m 이상(1)		5   4   3   2   1
4. 최근 5년간 수출(또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및 참여기간 - 납품액 개인 2천만원(단체 3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5년 이상(10) - 납품액 개인 1천만원(단체 2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4년 이상(8) - 납품액 개인 5백만원(단체 1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3년 이상(6) - 납품액 개인 5백만원(단체 5천만원) 미만 또는 참여기간 2년 이하(4) - 수출실적 없음(2)		10   8   6   4   2
5.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 3년 이상(10) - 2년 이상~3년 미만(8) - 1년 이상~2년 미만(6) - 1년 미만 또는 기타 실적(4) - 실적 없음(2)		10   8   6   4   2
6. 재배경력 - 10년 이상(10), 6~9년(8), 2~5년(6), 2년 미만(4), 무경험(2)		10   8   6   4   2
7. 기존시설 연간 10a당 난방비 소요액 및 난방기간 - 난방비 1천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150일 이상(5) - 난방비 5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120일 이상(4) - 난방비 3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90일 이상(3) - 난방비 1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60일 이상(2) - 난방비 1백만원 미만 또는 난방기간 60일 미만(1)		5   4   3   2   1
8. 주변으로부터의 민원 발생 가능성 - 반경 1km 이내 10 가구* 미만 있거나 축사가 5개소 미만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 설치 동의를 확보(10) - 반경 1km 이내 1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5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 설치 동의를 확보(8) - 반경 1km 이내 3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7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설치 동의를 확보(6) - 반경 1km 이내 5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10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설치 동의를 확보(4) - 반경 1km 이내 7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20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설치 동의를 확보(2)		10   8   6   4   2
* 농업경영체와 거주 중인 농가를 모두 포함		

조 사 항 목		배 점					득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9. 사업비 확보 가능성 · 예비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과 국고용자 모두 확보 완료(20) · 예비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은 확보 완료, 국고용자는 대출 가능성을 입증(16) · 최종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과 국고용자 모두 확보 완료(12) · 최종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은 확보 완료, 국고용자는 대출 가능성을 입증(8) · 최종사업자 선정 시까지 자부담은 확보 완료, 국고용자는 설계 종료 시까지 확보 가능성을 입증(4)		20	16	12	8	4	
10. 부대시설 설치 공간 확보 여부(축열조, 기계실 등) - 확보 완료(5), 미확보(0)		5					
11. 시공을 위한 공간 확보 여부 - 확보 완료(5), 미확보(0)		5					
12. 입지조건 - 암석토, 매립지 등 지반 여건이 시설물 설치에 적합한지 여부, 개발예정지역 여부, 상습침수지역 여부, 기후, 위치 등이 시설물 운영 시 경제성 확보에 유리한지 여부 등 검토(부적합 요소 없음 10점, 부적합 요소 1가지 8점, 부적합 요소 2가지 6점, 부적합 요소 3가지 4점, 부적합 요소 4가지 2점, 부적합 요소 5가지 0점)		10					
가점 (중복 적용 가능)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5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5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여부(여 5점 부 0점)	5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5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5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5					
	지역 푸드플랜 참여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	5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 가스 감축사업 참여	5					
계							
종합의견	· · · · ·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사업자 선정기준표(에너지절감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단체명(시·군·구명):

총득점: (     ) 점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1.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설치 (여/부), 2.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여/부)

### 1. 사업계획서 평가(5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15점)	사업비 확보 가능성 (15점)	판매계획의 적정성 (10점)	중장기 계획의 실현가능성(10점)	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높음(15점)</li> <li>▪ 높음(12점)</li> <li>▪ 보통(8점)</li> <li>▪ 낮음(4점)</li> <li>▪ 매우낮음(0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높음(15점)</li> <li>▪ 높음(12점)</li> <li>▪ 보통(8점)</li> <li>▪ 낮음(4점)</li> <li>▪ 매우낮음(0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적정(10점)</li> <li>▪ 적정(7.5점)</li> <li>▪ 보통(5점)</li> <li>▪ 미흡(2.5점)</li> <li>▪ 매우미흡(0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높음(10점)</li> <li>▪ 높음(7.5점)</li> <li>▪ 보통(5점)</li> <li>▪ 낮음(2.5점)</li> <li>▪ 매우낮음(0점)</li> </ul>	(     ) 점

### 2. 사업 신청일 기준 재배예정 주 품목에 대한 재배경험(30%)

구분	배점	공동선별·계산 실적	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 이상</li> <li>▪ 3년 이상 4년 미만</li> <li>▪ 2년 이상 3년 미만</li> <li>▪ 1년 이상 2년 미만</li> <li>▪ 6개월 이상 1년 미만</li> <li>▪ 6개월 미만</li> </ul>	30 20 15 10 5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이전:            개월</li> <li>▪ '18년:                    개월</li> <li>▪ '19년:                    개월</li> <li>▪ '20년:                    개월</li> <li>▪ 합계:                    년        개월</li> </ul>	(     ) 점

### 3. 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농업 교육이수 시간(20%)

구분	배점	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시간 이상</li> <li>▪ 7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li> <li>▪ 40시간 이상 70시간 미만</li> <li>▪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li> <li>▪ 14시간 이상 20시간 미만</li> <li>▪ 14시간 미만</li> </ul>	20 15 10 7 3 0	(     ) 점

### 4. 가점(중복적용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여부(여 5점, 부 0점): (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여 5점, 부 0점): (     ) 점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     )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     ) 점
-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5점): (     ) 점

### 5.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 미충족 (     )	대상 (     ) / 미대상 (     )

[별첨 2]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

## 시설원에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

□ 시설원에 작물별 생육온도 조건

구분	고온성	중온성	저온성
채소	파프리카, 메론, 고추, 가지	호박, 오이, 참외, 무, 수박	딸기, 배추, 상추, 시금치, 샐러리, 쪽갓, 철쭉
화훼	심비디움, 장미, 백합, 야자류, 호접란, 국화, 유스토마, 아나나스	고무나무, 카네이션, 글라디올러스, 동양란, 선인장, 거베라	튤립, 금어초, 스톡크, 데이지, 아이리스, 안개초, 프리지아, 페츰니아, 팬지, 프리물라, 시크라멘

\* 주) 위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면세유류 용량조건표 작성 기준임

□ 작물별 온도관리 기준

<채소류>

작물명	생육온도(℃)			
	최저한계온도	야간온도설정	생육적온	최고한계온도
멜론	15	18	28 ~ 30	35
고추	13	16	23 ~ 30	35
가지	13	16	22 ~ 30	35
파프리카	15	18	25 ~ 30	35
토마토	10	16	25 ~ 30	33
호박	10	11	23 ~ 25	35
오이	8	12	25 ~ 28	35
참외	8	11	22 ~ 28	35
수박	10	13	25 ~ 30	35
무	8	11	15 ~ 20	25
딸기	3	6	17 ~ 20	30
배추	5	8	13 ~ 18	23
상추	5	8	15 ~ 20	25
시금치	5	8	15 ~ 20	25
샐러리	5	8	15 ~ 20	25
쪽갓	5	8	15 ~ 20	25

<화훼류>

작물명	생육온도(℃)			
	최저한계온도	야간온도설정	생육적온	최고한계온도
심비디움	12	15	20 ~ 25	30
장미	5	15	24 ~ 27	30
아나나스	12	15	20 ~ 25	30
야자류	12	15	25 ~ 30	40
호접란	15	23	25	30
유스토마	12	15	20 ~ 25	30
백합	13	16	20 ~ 25	30
국화	7	15	18 ~ 20	30
거베라	7	13	16 ~ 20	30
고무나무	10	13	25 ~ 30	40
글라디올러스	10	13	25 ~ 30	35
동양란	10	13	20 ~ 25	40
선인장	10	13	25 ~ 30	50
카네이션	7	13	15 ~ 21	30
철쭉	4	8	20 ~ 25	35
프리지아	7	10	13 ~ 16	30
튜울립	5	10	15 ~ 20	30
아이리스	7	10	15 ~ 20	30
숙근안개초	7	10	15 ~ 18	20
금어초	7	10	15 ~ 20	25
스톡크	7	10	20 ~ 25	25
팬지	7	10	15 ~ 20	25
데이지	7	10	15 ~ 20	25
페츨니아	7	10	20	30
프리물라	7	10	15 ~ 20	25
시크라멘	7	10	18 ~ 20	30

\* 주) 야간온도설정: 최저생육한계온도 + 3℃

[별첨 3] 기성고 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m <sup>2</sup> )				구조		
사업계획	합계 (A=B+ C+ D)		자부담(B)	보조금(C)	용자금(D)	
	1000천원		400천원(40%)	300천원(30%)	300천원(3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사업실적	공정률 (J=E/A)	합계 (E=F+ G+ H+ I)	자부담(F)	보조금(G)	용자금(H)	기타(I)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40%	400천원	200천원	100천원	0천원	100천원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현황	금번 대출 신청액(L)		기 대출액(K)		대출 총계(=L+K)	
	120천원		천원		천원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대출취급기관에서 최종 산출)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산출 시 유의사항	
1. 자부담비율이 연간 사업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①최초 대출시 F는 B*1/2 이상 집행 여부 확인 ②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J) - (F+G+K))	
2. 1호 이외의 경우 : 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J) - (B+ G+ K))	
천원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 1. 표준안

#### 가. 준공전 안내문

<b>사 업 개 요</b>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 110cm —————→

↑  
80 cm  
↓

####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 30cm —————→

↑  
21 cm  
↓

## 다. 스티커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대 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시설원예현대화			예산 (백만원)	11,738			
사업목적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 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축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자재·설비 등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류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지원내용	○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 - 화훼류 고품질 주년생산 및 난류 온실 개선 시설·설비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8월까지 시·군에 제출							
지원대상 선정	○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101,920	77,150	46,300	38,350			
	국 고	20,384	15,430	9,260	7,670			
	지 방 비	30,576	23,145	13,890	11,505			
	용 자	30,576	23,145	13,890	11,505			
	자 부 담	20,384	15,430	9,260	7,67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최은철 주무관 정민용		044-201-2256 044-201-2259		

## 1. 사업대상자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총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시·군이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2. 지원유형별 자격 및 요건

- 원예시설(채소류·화훼류)
  -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농협·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유사도매시장 등)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 지원제외 대상자 >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
  - APC·농협·농업법인·조공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 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시·군의 전체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30% 이하로 지원
  - 비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채소류·화훼류)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
  -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 \* 측고인상 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차열시설, 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 기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빗물저장시설, 방충망\*
- \* 수출 농산물 재배용 온실에 한해 지원(단,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 시에만 가능)
- 지자체 공동구매 품목 : 골조(KS 규격제품), 장기성 필름
- \* (골조) 내재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장기성필름) 내재해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또는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시설에 한해 지원
-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 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자재구입 및 시공시 유의사항에 따른 공동 구매절차 준수)
- \* 단, 사업신청 시 공동구매 추진계획을, 설치 후에는 추진실적을 반드시 농식품부에 제출 해야하며, 장기성필름 지원 농가는 폐비닐처리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고품질 주년생산 및 난류 온실 개선 시설·설비
  -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하절기온도하강설비, 온도하강 차광시스템, 연작 장해 경감용 베드시설, 휴작기 종구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
  - 난류(호접란·심비디움) 미국수출 검역절차에 따른 온실개선 시설·설비 : 이중출입문(2개의 문이 동시에 열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닫히는 출입문), 재배벤치(바닥으로부터 46cm 이상 높이, 벤치다리 동판 설치 등)

< 지원제외 대상시설 >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단동형·이동형 비규격 온실 현대화 지원을 원칙적 제외하나, 단동형·이동형 온실에 적합한 작물은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예냉·저장·선별시설 등(용자지원 전환)

####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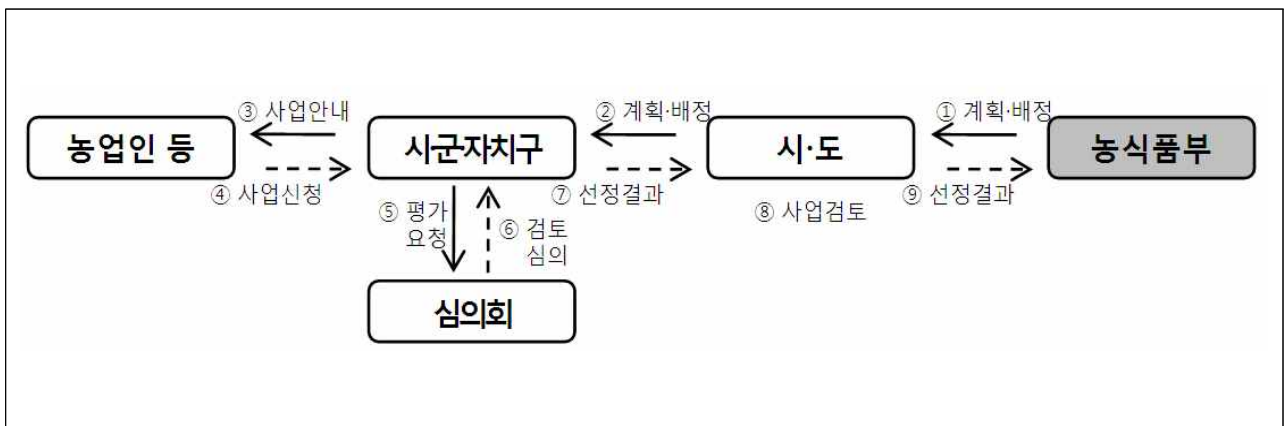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 II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 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

###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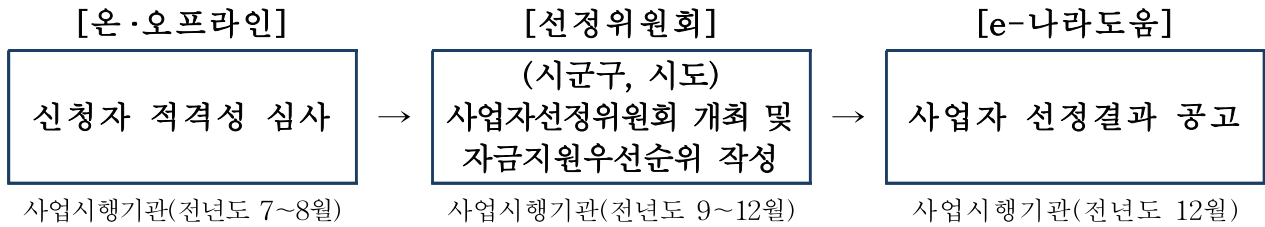
- 시설원예(채소·화훼류)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출하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제2-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1~2)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 사업대상자

- 원예시설(채소류·화훼류)
  - 사업신청자는 소속 농업인 등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 사업신청자는 소속 농업인 등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출하약정서와 함께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
  -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 및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 용자 희망농가는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 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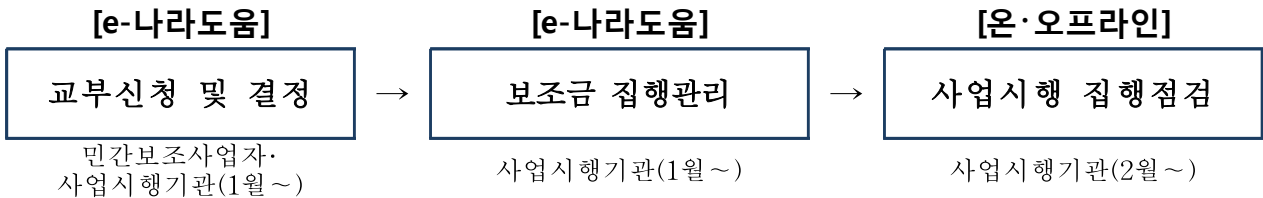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시·군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와 농식품부 예산확정 결과를 검토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시·도의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 자금배정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교부하고(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교부된 소요자금을 시장·군수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 자금집행

####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2)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 ① 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 연장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시·군에 사업비(국고보조, 용자, 지방비) 배정·교부를 요청하며, 국고용자 대출을 신청
-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용자금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용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4. 사업 시행 단계

###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제출
      -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단가계약),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총사업비 기준 물품구매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 가능
      -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 「지하수법」, 전기시설은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시공, 기타 시설·장비 등은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 선정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 기존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설원예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19년 이후 금속 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전 시행한 온실 설치공사 실적을 인정
-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원가계산서 등) 확인
- 시장·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 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단가계약)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 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하는 경우 다음 절차 준수
  - \* 수요조사 → 모집공고(농협) → 견적서 제출 → 공급가격 결정 협의회(지자체, 농협, 농민단체, 농업인, 업체) → 단가계약 체결(농협-업체) → 공급(농협)
- 측고인상 시에는 측고인상 이후 해당시설이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을 상회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기술사가 발급한 구조계산서를 제출
  - \* 구조계산서 발급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5-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 사업계획 변경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 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 사업 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중도회수 사유로 보지 않음

##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 온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설비시설	준공일	7년	
▪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준용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4)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게 처분 승인 요청

### 제재 및 처벌내용

####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 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사후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미이행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며,
  -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 사업수행자(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 농협은행(농·축협)

- 대출취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중도회수 개시일을 시·군 등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의 명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도(시·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 1. 2022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22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1.3월)
- 농식품부는 시·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21.3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21.9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21.12월) → 사업추진('22.1월 ~)

### 2. 202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자치구
- 제출기한 : '21. 7~8월
- 신청자격 : '21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 '22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1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후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에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input type="checkbox"/> 개인				단체( <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 <input type="checkbox"/> 농업회사,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 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난방 시설	난방 유형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가온 방식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에 현대화	<input type="checkbox"/> 원예시설 <input type="checkbox"/> 화훼류					㎡		
ICT 융복합 확산			<input type="checkbox"/>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신재생에너지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감		<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지열(성능개선) <input type="checkbox"/> 폐열, <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난방기 <input type="checkbox"/> 다겹보온커튼, <input type="checkbox"/> 보온덮개 <input type="checkbox"/> 순환식수막시설, <input type="checkbox"/> 공기열,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용자(신청액)	자부담					
<p>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ICT융복합 확산(컨설팅)사업 추진 시 자부담 납부에 동의합니다.</p>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별지 제2-1호 서식]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원예시설]

### 1. 일반현황

#### 가. 경영체 기본현황

법인명/ 농업인 성명		법인 대표명		설립일/생년월일	
				성 별	
주소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 ) 기 재 생 략			
		마을 이름:			
	실제 거주지	(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 나. 시설현황

#####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m <sup>2</sup>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 다. 재배현황(품종별)

\* '20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8(A)						
	2019						
	2020(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8(A)						
	2019						
	2020(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다. 농업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실적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료증 사본 별첨

바.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명(지원연도)	사업대상지 주소	면적(m <sup>2</sup> )	총사업비 (천원)	국고보조 (천원)	융자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m <sup>2</sup>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m<sup>2</sup>(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용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자부담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자부담 확보방안 기술)

-

◦ 국고융자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신용·담보대출 추진계획 기술)

-

◦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m <sup>2</sup>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다. 생산 및 수출계획

◦ 생산계획

구분	연도	출하실적(톤)				농식품 인증(%)	표준규격 출하(%)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생산실적 및 계획	2018						
	2019						
	2020						
	2021 계획						

◦ 수출계획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
수출실적 및 계획	2018					
	2019					
	2020					
	2021 계획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수출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수출신장 :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원화금액기준)

3. 판매 계획

\* 각 항목별로 판매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가. 최근 2년간 판매실적

◦

나. 판매 경로 및 방법

◦

다.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4.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가. 사업 추진 필요성

◦

나. 기대효과

1) 생산성 향상 및 수급 안정

◦

◦

2) 수출 확대

- 
- 

3)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 

4) 유통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 
- 

5) 기타

- 

5. 중장기 계획

가. 추진목표 및 전략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부					
내용					

나. 경영수지전망

(단위 : 천원)					
구분	목표 및 전망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조수입)					
경영비					

6.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가. 문제점

- 
- 

나. 애로(건의)사항

-

## 7. 종합의견

가. 시·도 종합검토 의견

- 
- 

나. 시·군·구 종합검토 의견

- 

위와 같이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 1. 일반현황

#### 가. 단지(단체) 개요

##### ◦ 기본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m <sup>2</sup>	시설재배규모	m <sup>2</sup>	수출참여규모	m <sup>2</sup>		
기 지원액 (백만원)	사업명(지원연도)		합계	국고보조	응자	지방비	자부담
	시설원예현대화(2016)		1,000	200	300	300	200

#### 나. 시설현황

#####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m <sup>2</sup>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 다. 재배현황(품종별)

\* '20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8(A)						
	2019						
	2020(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8(A)						
	2019						
	2020(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다.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료증 사본 별첨

바.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명(지원연도)	사업대상지 주소	면적(m <sup>2</sup> )	총사업비 (천원)	국고보조 (천원)	융자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m <sup>2</sup>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m<sup>2</sup>(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용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자부담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자부담 확보방안 기술)

-

◦ 국고융자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신용·담보대출 추진계획 기술)

-

◦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m <sup>2</sup>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다. 생산 및 수출계획

◦ 생산계획

구분	연도	출하실적(톤)				농식품 인증(%)	표준규격 출하(%)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생산실적 및 계획	2018						
	2019						
	2020						
	2021 계획						

◦ 수출계획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
수출실적 및 계획	2018					
	2019					
	2020					
	2021 계획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수출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수출신장 :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원화금액기준)

바. 수출 및 선별방법

구분	수 출 자		수출방법		선별방법		재배방법	
	자체	위탁	개별농가	단지공동	개별농가	단지공동	비계약	계약
2018	%	%	%	%	%	%	%	%
2019								
2020								
2021 계획								

사. 농업분야 교육이수 실적(안전성, 수출 등)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3.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가. 사업 추진 필요성

◦

나. 기대효과

1) 생산성 향상 및 수급 안정

◦

◦

2) 수출 확대

- 
- 

3)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 

4) 유통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 
- 

5) 기타

- 

4. 지역사회에의 기여계획

- 
- 

5. 종합의견

가. 시·도 종합검토 의견

- 

나. 시·군·구 종합검토 의견

- 

위와 같이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신청자(단체)명: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배 품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보조사업자)

1.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용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00%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교 부 목 적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보조사업자)는 「○○○」사업 추진 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일반공사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다.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 사업시행지침서를 위반하는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 년 ○○월 ○○일





[별지 제5-2호 서식]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연대보증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약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현장		
	지체상금율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	.
	착공연월일	.	.
	준공연월일		
기타사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 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p>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임의 계약 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p>불임서류 :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2.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3.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4. 설계서 1부 (필수) 5. 산출내역서 1부 (필수)</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 style="text-align: right;">지자체 계약담당공무원 (인) 또는 농업(법)인 (인) 계약상대자 (인) 연대보증인 (인)</p>			

※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결정

[별지 제6호 서식]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에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선정사업	<input type="checkbox"/> 시설원에현대화, <input type="checkbox"/> ICT융복합확산, <input type="checkbox"/>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유형	<input type="checkbox"/> 농업인, <input type="checkbox"/> 농업법인,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p>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p>					

##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군구명	단체명	대표자	농가명	주 재배작물	사 업 량																					사업비		창간연월	주간연월	불용 사유			
							사업구분			계획		집행실적 (정산)				대비 (D/C)	다음해 이월			불용															
							세부사업	계획(A)	실적(B)	대비(B/A)	계	국고(C)	응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D)	응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응자	지방비											
										%																									
계																				%															

**주1) 작성요령**

- 가. “사업구분”: 원예시설,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육성 구분 기재
- 나. “세부사업”: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등 기재
- 다. “주 재배작물”: 대표 품목명 1개 기재(예시: 토마토, 오이, 백합 등)
- 라. “사업량”: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m<sup>2</sup>, ha 등)
- 마.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8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

(단위: 천원)

구분	회계 연도	시도명	시군명	사업 자명	생년 월일	사업비					포기·이월 사유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주1) 작성요령

가. “구분”: 포기, 이월 구분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첨 1-1]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선정기준 조정 가능

## 사업자 선정기준표(원예시설)

□ 사업자명: (대표자: ) □ 총득점: ( ) 점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 1. 노후 지원 대상시설 교체(여/부), 2.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여/부), 3.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여/부), 4.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재배(여/부)

1. 사업계획서 평가(5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15점)	사업비 확보 가능성 (15점)	판매계획의 적정성 (10점)	중장기 계획의 실현가능성(10점)	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높음(15점)</li> <li>▪ 높음(12점)</li> <li>▪ 보통(8점)</li> <li>▪ 낮음(4점)</li> <li>▪ 매우낮음(0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높음(15점)</li> <li>▪ 높음(12점)</li> <li>▪ 보통(8점)</li> <li>▪ 낮음(4점)</li> <li>▪ 매우낮음(0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적정(10점)</li> <li>▪ 적정(7.5점)</li> <li>▪ 보통(5점)</li> <li>▪ 미흡(2.5점)</li> <li>▪ 매우미흡(0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높음(10점)</li> <li>▪ 높음(7.5점)</li> <li>▪ 보통(5점)</li> <li>▪ 낮음(2.5점)</li> <li>▪ 매우낮음(0점)</li> </ul>	( ) 점

2. 사업 신청일 기준 재배예정 주 품목에 대한 재배경험(30%)

구분	배점	공동선별·계산 실적	득점
▪ 4년 이상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이전:            개월</li> <li>▪ '18년:                개월</li> <li>▪ '19년:                개월</li> <li>▪ '20년:                개월</li> <li>▪ 합계:                년        개월</li> </ul>	( )점
▪ 3년 이상 4년 미만	20		
▪ 2년 이상 3년 미만	15		
▪ 1년 이상 2년 미만	10		
▪ 6개월 이상 1년 미만	5		
▪ 6개월 미만	0		

3. 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농업 교육이수 시간(20%)

구분	배점	득점
▪ 100시간 이상	20	( )점
▪ 7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15	
▪ 40시간 이상 70시간 미만	10	
▪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7	
▪ 14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3	
▪ 14시간 미만	0	

4. 가점(중복 적용 가능)

- 농산물전문생산단지내 소속된 농업경영체(5점): ( )점
- 일반원예시설 중 APC·농협·농업법인·조공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5점): (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5점):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 )점

5.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 미충족 ( )	대상 ( ) / 미대상 ( )

[별첨 1-2]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선정기준 조정 가능

## 사업자 선정기준표(화훼류 신수출)

□ 사업자명: (대표자: ) □ 총득점: ( ) 점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 1. 노후 지원 대상시설 교체(여/부), 2.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여/부), 3.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여/부), 4.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재배(여/부)

1. 사업계획서 평가(4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15점)	사업비 확보 가능성 (15점)	생산·수출계획의 적정성 (10점)	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높음(15점)</li> <li>▪ 높음(12점)</li> <li>▪ 보통(8점)</li> <li>▪ 낮음(4점)</li> <li>▪ 매우낮음(0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높음(15점)</li> <li>▪ 높음(12점)</li> <li>▪ 보통(8점)</li> <li>▪ 낮음(4점)</li> <li>▪ 매우낮음(0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적정(10점)</li> <li>▪ 적정(7.5점)</li> <li>▪ 보통(5점)</li> <li>▪ 미흡(2.5점)</li> <li>▪ 매우미흡(0점)</li> </ul>	( ) 점

2. 최근 3년간 총 출하실적 중 수출실적(40%)

구분	배점	수출실적	총 출하실적	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0%이상</li> <li>▪ 80%이상~90%미만</li> <li>▪ 70%이상~80%미만</li> <li>▪ 60%이상~70%미만</li> <li>▪ 50%이상~60%미만</li> <li>▪ 50%미만</li> </ul>	40 35 30 20 1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톤</li> <li>▪ 2019년:           톤</li> <li>▪ 2020년:           톤</li> <li>▪ 합계(A):           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톤</li> <li>▪ 2019년:           톤</li> <li>▪ 2020년:           톤</li> <li>▪ 합계(B):           톤</li> </ul>	$(A/B) \times 100 = ( )\%$  ( ) 점

3. 해당 품목에 대한 시·도 총출하량 중 점유비율(20%)

구분	배점	해당 조직	○○시·도	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li> <li>▪ 50%이상~100%미만</li> <li>▪ 30%이상~50%미만</li> <li>▪ 20%이상~30%미만</li> <li>▪ 20%미만</li> </ul>	20 16 12 8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 년:           톤</li> <li>▪ 20 년:           톤</li> <li>▪ 20 년:           톤</li> <li>▪ 합계(A):           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 년:           톤</li> <li>▪ 20 년:           톤</li> <li>▪ 20 년:           톤</li> <li>▪ 합계(A):           톤</li> </ul>	$(A/B) \times 100 = ( )\%$  ( ) 점

4. 가점(중복 적용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5점): (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 )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 ) 점
- 해당 품목의 전국 또는 지역단위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5점): ( ) 점

5.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총족 ( ) / 미총족 ( )	대상 ( ) / 미대상 ( )

[별첨 2] 기성고 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m <sup>2</sup> )				구조		
사업계획	합계 (A=B+C+D)		자부담(B)	보조금(C)	용자금(D)	
	1000천원		400천원(40%)	300천원(30%)	300천원(3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사업실적	공정률 (J=E/A)	합계 (E=F+G+H+I)	자부담(F)	보조금(G)	용자금(H)	기타(I)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40%	400천원	200천원	100천원	0천원	100천원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현황	금번 대출 신청액(L)		기 대출액(K)		대출 총계(=L+K)	
	120천원		천원		천원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대출취급기관에서 최종 산출)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산출 시 유의사항
1. 자부담비율이 연간 사업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①최초 대출시 F는 B*1/2 이상 집행 여부 확인 ②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J) - (F+G+K))
2. 1호 이외의 경우 : 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J) - (B+G+K))
천원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 1. 표준안

#### 가. 준공전 안내문

<b>사 업 개 요</b>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 110cm —————→

↑  
80 cm  
↓

####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 30cm —————→

↑  
21 cm  
↓

## 다. 스티커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대 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세부사업명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시설보급)				예산 (백만원)	3,500		
사업목적	○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 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시설원에 분야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보급 및 컨설팅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지원내용	○ 국고 30%, 지방비 30% (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사업비 상한액 : 200백만원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컨설팅 : 국고 80%, 자부담 20%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8월까지 시·군에 제출							
지원대상 선정	○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21,625	21,625	10,500	10,500			
	국 고	4,825	4,825	3,500	3,500			
	지방비	6,300	6,300	3,000	3,000			
	용 자	6,300	6,300	-	-			
	자부담	4,200	4,200	4,000	4,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최은철 주무관 정민웅		044-201-2256 044-201-2259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스마트농업지원실		실 장 이경개 팀 장 이택선		044-861-8760 044-861-8761		

## 1.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총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시·군이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 컨설팅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전점검 컨설팅, 설치점검 컨설팅을 반드시 실시

### < 지원제외 대상자 >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스마트팜 실증단지 검인증 기자재

###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 :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sub>2</sub>,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sub>2</sub>,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을 제어하기 위한 장비
    -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와 제어장비 동시 설치 지원 가능(동시 설치 시에 한해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신청 가능)
  -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지원 가능)
    -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6, 2018)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5, 2018)을 따라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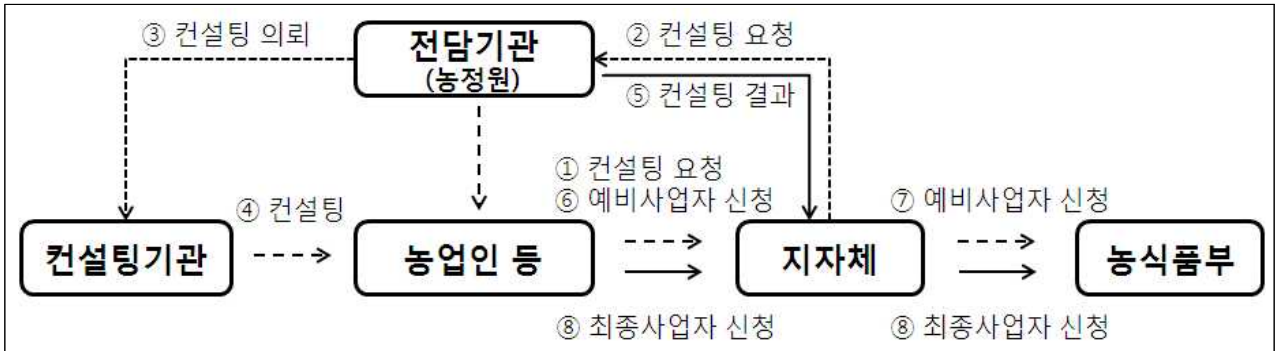
-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보조 지원
  -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물품납품 또는 공사시공 업체는 농식품부(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 컨설팅 :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상한액 : 200백만원(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 ICT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대상)와 제어장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전년도 10~12월)

#### 시·군

- 사업대상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신청 시 시·군은 사전점검 컨설팅 자부담금 납부 확인 후 컨설팅 전담 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고, 컨설팅 기관에서 컨설팅 시행 후 제출한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사전점검)를 바탕으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전점검 컨설팅 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시·군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3~8월)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
    -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 및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 컨설팅 전담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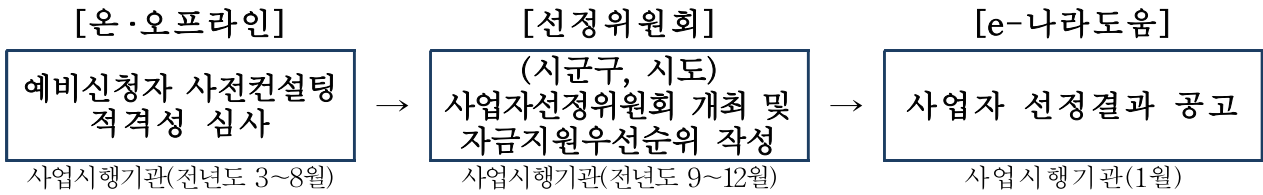
-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컨설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기관을 선정(전년도 상반기)
  - ICT 융복합 시설의 규격·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 등 안내
  - ICT 시설 활용도 제고 및 효과 확산을 위해 농가, 지자체 담당자 등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 실시(연중)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은 농업인 등 대상으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시·군 및 전담기관에 제출(전년도 8월)
  - 컨설팅 시 농업인 등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



##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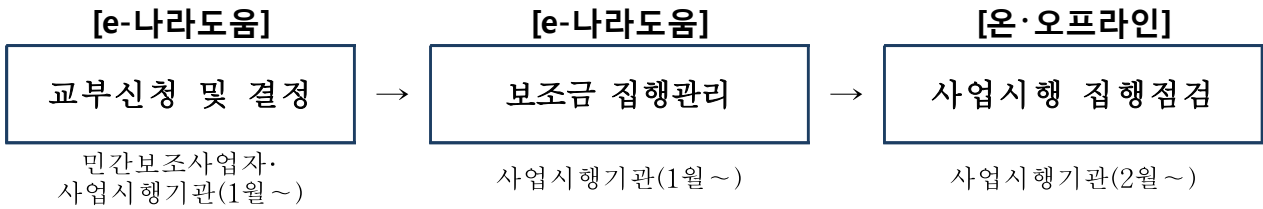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 자금배정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 결정통지서)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교부된 소요자금을 시장·군수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 자금집행

####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2항 “농식품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시·군에 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 배정·교부를 요청

## 4. 사업 시행 단계

###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 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제출
      -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총사업비 기준 물품구매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 가능
  -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 「지하수법」, 전기시설은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 기존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설원예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19년 이후 금속 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전 시행한 온실 설치공사 실적을 인정
-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를 확인
- 시장·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 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단가계약)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 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5-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 사업계획 변경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 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 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 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교체·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컨설팅 전담기관에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 사업 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중도회수 사유로 보지 않음

##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설치점검 컨설팅을 요청한 농업인 등에 컨설팅 자부담분 납부 안내 및 확인 후 컨설팅 전담기관(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 설치점검 컨설팅을 의뢰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 온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설비시설	준공일	7년	
▪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등 준용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농식품부(농정원)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 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시설·장비 설치 완료 후 컨설팅기관에 설치점검 컨설팅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시·군에 설치점검 컨설팅 요청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4)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게 처분 승인 요청

### 컨설팅 전담기관

- 사전 컨설팅, 시설설치 컨설팅,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농식품부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 현지방문·점검

### 컨설팅기관

- 사업대상자별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 및 시·군에 제출

## 제재 및 처벌내용

###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 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 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 해당기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 제한
  -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도(시·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 Ⅲ

##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 1. 2022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22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1.3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21.3월) → 사전컨설팅(~'21.8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21.9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21.12월) → 사업추진('22.1월~)

### 2. 202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1. 8월
- 신청자격 : '22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 '22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1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후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에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input type="checkbox"/> 개인		단체( <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 <input type="checkbox"/> 농업회사,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 시설	원예	유리온실 ㎡	경질판온실 ㎡	자동화비닐온실 ㎡	일반온실 ㎡	버섯재배사 ㎡	
		축산	무창돈사 마리	무창계사 마리	무창오리사 마리	무창분만돈사 마리	무창임돈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	예냉·저장·선별 ㎡	관수시설 ㎡	환경제어 ㎡	기타 ㎡	
		난방 시설	난방 유형	온풍난방 ㎡	온수난방 ㎡	온수보일러 ㎡	태양열병합 ㎡	기타 ㎡
		가온 방식	고체연료 ㎡	유류·가스 ㎡	전기 ㎡	지열·지중열 ㎡	기타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에 현대화	<input type="checkbox"/> 원예시설 <input type="checkbox"/> 화훼류				㎡
			ICT 융복합 확산	<input type="checkbox"/>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신재생에너지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감		<input type="checkbox"/> 지열, <input type="checkbox"/> 지열(성능개선) <input type="checkbox"/> 폐열, <input type="checkbox"/> 목재펠릿난방기 <input type="checkbox"/> 다겹보온커튼, <input type="checkbox"/> 보온덮개 <input type="checkbox"/> 순환식수막시설, <input type="checkbox"/> 공기열,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p>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ICT융복합 확산(컨설팅)사업 추진 시 자부담 납부에 동의합니다.</p>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시설보급)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m <sup>2</sup>		시설재배규모	m <sup>2</sup>		수출참여규모	m <sup>2</sup>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응자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 '20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 분	재배면적(m <sup>2</sup> )	생산량(톤)	소득액(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 시설 현황

시설면적	m <sup>2</sup>		사업신청 면적	m <sup>2</sup>		
시설종류	(예시) 유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온실형태	(예시) 5연동, 10동		
시설위치	마을까지 거리, 기타 단지 특징					
부대시설	양액시설	냉난방시설	보온시설	통합제어	기타	
형태(종류)						
제조사(모델명)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종류	세부내역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외부환경 센싱	온습도, 풍향, 풍속, 감우, 일사 등의 센싱장비		
온실내부 센싱	온습도, CO <sub>2</sub> , 토양, 양액 등 센싱장비		
구동기 제어	천창, 측창, 보온커튼, 난방비, 유동팬 등 제어장비		
통합제어	통합제어판, 통합제어시스템 등		
온실관리	PC, 원격제어, 모바일시스템 등		
모니터링	CCTV, 웹캠, 녹화장비 등		
기타	시설비, 양액제어시스템 등		
합계			

(2쪽에 계속)

## 나. 세부계획

구분	세부내역	단가(천원)	개수	합계(천원)
합 계				
○ 외부환경 센싱				
-				
-				
○ 온실내부 센싱				
-				
○ 구동기 제어				
-				
○ 통합제어				
-				
○ 온실관리				
-				
○ 모니터링				
-				
○ 기타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다. 사업비 소요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용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m <sup>2</sup>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3쪽에 계속)

라.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 제공승낙서, 인감증명: 타인소유> 등 첨부)
- 

4. 생산·수출·경영 계획

가.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 수출전략
- 

다. 경영 계획

- 작목 재배관리, 정보화(PC, 모바일) 등의 학습계획
- 
-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후계자 활용 등)
- 

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신청자(단체)명: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배 품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보조사업자)

1.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00%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교 부 목 적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보조사업자)는 「○○○」 사업 추진 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일반공사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다.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 사업시행지침서를 위반하는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 년 ○○월 ○○일



[별지 제5-1호 서식]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약내용	물품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제조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율	%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납품일자	. . . ~ . . .				
	납품장소					
기타사항						
<p>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p>붙임서류 : 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1부 2.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1부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1부 4. 규격 및 내용서 또는 산출내역서 1부(필수)</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지자체 계약담당공무원 (인) 또는 농업(법)인 계약상대자 (인)</p>						
물품내역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유지보수 기간

※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결정

[별지 제5-2호 서식]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연대보증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약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현장			
	지체상금율		%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 · ·		
	착공연월일	· · ·		
	준공연월일			
기타사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 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p>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임의 계약 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p>불임서류 :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2.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3.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4. 설계서 1부 (필수) 5. 산출내역서 1부 (필수)</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 .</p> <p style="text-align: right;">자치체 계약담당공무원 (인) 또는 농업(법)인 (인) 계약상대자 (인) 연대보증인 (인)</p>				

※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결정

## [통합] 시설원에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선정사업	<input type="checkbox"/> 시설원에현대화, <input type="checkbox"/> ICT융복합확산, <input type="checkbox"/>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유형	<input type="checkbox"/> 농업인, <input type="checkbox"/> 농업법인,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p>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p>					

## [통합] 시설원에 분야 사업추진상황 보고

(사업명: )

(단위: 천원)

시군	사업자명	농가수	재배품목	사업구분	세부사업	사업량 m <sup>2</sup>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내역	공정률 %	계		국고		용자		지방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명: “시설원에현대화”, “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나. 사업구분

- 시설원에현대화 : 원예시설, 화훼류
- ICT융복합확산 : 복합환경관리, 단순환경관리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 스마트팜 종합자금(농협) : 온실신개축, 시설개선

다. 세부사업

- 시설원에현대화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ICT융복합확산 :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지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시설 등
- 스마트팜 종합자금(농협) : 철골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예냉시설, 저장시설, 선별시설, 피복시설 등

라. “주요추진내역”란은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리를 표시

마. “사업비집행”은 전월 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1. 금후 사업추진일정

- 
- 

2. 사업추진 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 
- 

3. 기타 참고사항

- 
-

## 시설원에 ICT 융복합 확산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군구명	단체명	대표자	농가명	주 재배작물	사 업 량													사 업 비										잔고액	불용 사유
							사업구분	세부사업	계획(A)	실적(B)	대비(B/A)	계 획				집행실적(정산)				대비(D/C)	다음해 이월			불용			잔고액				
												계	국고(C)	옹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D)	옹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옹자	지방비	국고		옹자	지방비		
							%													%											
계																															

주1) 작성요령

- 가. “사업구분”: 복합환경관리, 단순환경관리 구분 기재
- 나. “세부사업”: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시설·장비 내용 등 기재
- 다. “주 재배작물”: 대표 품목명 1개 기재(예시: 토마토, 오이, 백합 등)
- 라. “사업량”: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m<sup>2</sup>, ha 등)
- 마.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9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

(단위: 천원)

구분	회계 연도	시도명	시군명	사업 자명	생년 월일	사업비					포기·이월 사유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주1) 작성요령

가. "구분": 포기, 이월 구분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 사업자 선정기준표(ICT 융복합 확산)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1.노후 온실 개보수와 동시 추진 (여/부), 2.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여/부)

시군	사업 신청자	시설조건(40점)		활용조건(40점)			가점	합계 (100점)
		온실 조건 (25점)	ICT 시설 (15점)	시설 활용 (20점)	사업 지속성 (10점)	부대 환경 (10점)		

가점조건(중복 적용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5점): (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    )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    ) 점
- 스마트팜 실증단지 검인증 기자재 사용(5점): (    ) 점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 미충족 (    )	대상 (    ) / 미대상 (    )

< 평가 참고사항 >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사업계획 신청서 및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하고, 시·도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구 농정심의회)에서 공개심의
  -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의 평가항목에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에서 배점에 대한 구간(구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10점 한도 내에서 가점 구간 내 항목 추가·변경 가능
- 시설조건
  - 온실조건: 온실의 종류, 규모화, 작목, 재배기간 등 ICT 융복합의 적합성 정도
  - ICT 시설: 온실내 자동화 정도, 기 도입된 ICT 융복합 시설의 보유 정도
- 활용조건
  - 시설 활용: ICT 시설장비 활용 능력 정도 및 시설운영, 정보화 교육 수료 경력 여부 등
  - 사업 지속성: 농업후계인력 확보, 토지매입 및 시설투자 계획 여부 등
  - 부대환경: 작업장의 상황 정도(전원공급, 무선통신 및 PC설치·운영 가능상황 등)

[별첨 2] 기성고 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m <sup>2</sup> )				구조		
사업계획	합계 (A=B+C+D)		자부담(B)	보조금(C)	용자금(D)	
	1000천원		400천원(40%)	300천원(30%)	300천원(3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사업실적	공정률 (J=E/A)	합계 (E=F+G+H+I)	자부담(F)	보조금(G)	용자금(H)	기타(I)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40%	400천원	200천원	100천원	0천원	100천원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현황	금번 대출 신청액(L)		기 대출액(K)		대출 총계(=L+K)	
	120천원		천원		천원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대출취급기관에서 최종 산출)

<b>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산출 시 유의사항</b>	
1. 자부담비율이 연간 사업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①최초 대출시 F는 B*1/2 이상 집행 여부 확인 ②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J) - (F+G+K))	
2. 1호 이외의 경우 : 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J) - (B+G+K))	
천원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 1. 표준안

#### 가. 준공전 안내문

<b>사 업 개 요</b>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 110cm →

↑ 80 cm ↓

####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 30cm →

↑ 21 cm ↓

## 다. 스티커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대 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세부사업명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스마트팜 온실신축)			예산 (백만원)	6,840			
사업목적	○ ICT 융복합 기술 적용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을 지원하여 FTA 등 시장개방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주요내용	○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 경질판) 및 자동화 비닐온실 신개축 비용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수출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지원내용	○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및 공모계획서를 전년도 6월까지 해당 시·군에 제출							
지원대상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평가를 통하여 선정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1,980	39,600	24,000	18,000			
	국 고	396	7,920	4,800	3,600			
	지방비	594	11,880	7,200	5,400			
	용 자	594	11,880	7,200	5,400			
	자부담	396	7,920	4,800	3,6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최은철 주무관 정민웅		044-201-225604 4-201-2259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팜사업부		부 장 한재욱 차 장 류성연		061-338-5721 061-338-5727		

## 1.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류 재배·수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총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시·군이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결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요건

#### 가. 시설규모

- 규모화를 통한 물류효율성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목별 지원규모 설정
- 지원시설 규모 : 0.5ha~2.0ha
  -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이고 1ha 이상 온실 운영 경험자는 3ha까지 지원

#### 나. 사업부지 및 사업비

- 부지는 20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등을 온실신축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동시에 사업기간 내 추진이 가능함을 입증한 경우

#### 다. 의무수출비율

- 수출 주력 농업경영체를 지원하여 신선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의무수출비율 설정
  - 의무비율: 파프리카 50%, 토마토 40%, 딸기 60%, 기타품목 30% 이상
  - 수출 적합품 수확, 시장개척 기간 등을 고려하여 3년간 유예(이후 수출입국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계획 물량의 10% 오차 허용)
    - \* 유예기간 시작일은 준공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과 첫 출하일 중 우선 도래일로 정함
  - 유예기간 후 의무수출비율 불이행 시 해당 사업자에 수출 물류비 지원 제한 등 패널티 부과, 유예기간 후 7년 내 3년 연속 의무수출비율 불이행 시 보조금 환수, 융자금 상환,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시설자금 지원 제한 등 조치

#### 라. 사업유형

- 위탁설계형 : 온실신축사업을 통해 설계와 시공을 모두 진행(설계·시공 모두 농어촌공사에 위탁)
- 자가설계형 : 온실신축사업을 통해 시공만을 진행(설계는 자부담으로 직접 실시, 시공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및 자동화 비닐온실 신·개축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 \* (ICT 융복합 시설)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 (연계시설) 관수관비장비(양액 재활용시설, 자동관수시설 등), 환경관리장비(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 \* 양액재배시설은 반드시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
  - 위탁설계형은 설계비를 총사업비에 포함, 자가설계형은 설계비 자부담으로 추진

- ICT 융복합 시설 설치·운영·관리 요령 등 컨설팅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절·성토, 부지정지, 파일공사, 지반개량 등) ,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 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보일러 설비는 자부담 설치, 냉난방 배관설비는 사업비 지원 가능),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선별기 등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장비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냉난방시설
- 숙소, 식당 등 온실 환경제어 및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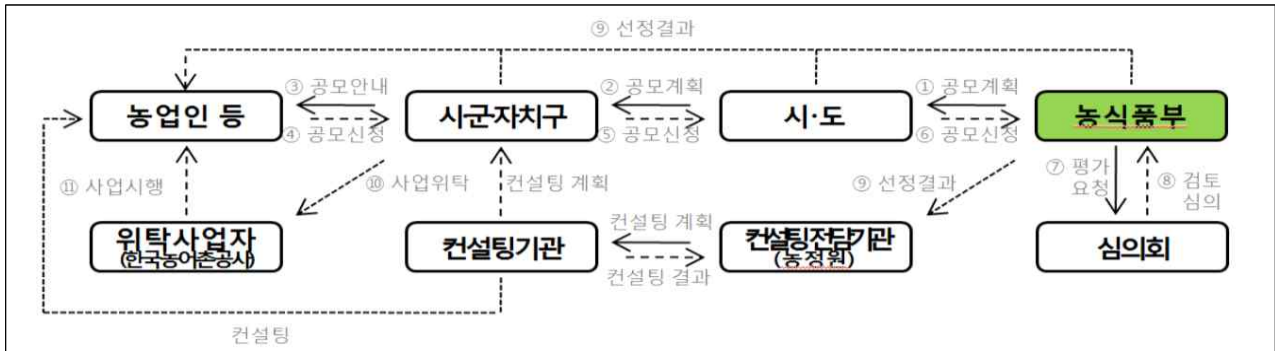
※ 지원제외 대상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필요 시 자부담을 추가하여 동일사업으로 추진 가능)

####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사업기간 : 2년(1년차 설계, 2년차 시공)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용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 용자금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용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 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 5. 지원 기준 및 범위

- 기준 단가: 철골유리온실 3,000백만원/ha, 파이프비닐온실 750백만원/ha
  - \* 본 단가는 사업계획 수립 시 예시 기준으로 설계조건, 예정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운용 병행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공모)계획 안내(전년도 3월)
  - 신청자격, 지원내용, 사업규모, 응모 방법, 사업자 선정계획 등 안내
- 사업신청서·계획서 등 제반서류 접수(전년도 6월)

#### 시·도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사업(공모)계획 안내(전년도 3월)
- 시·군 제출 사업신청서·계획서 등 제반서류 검토 및 지방비 지원 여부 결정 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함)에 제출(전년도 6월)

#### 시·군

- 채소·화훼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공모)계획 안내(전년도 3월)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 제반서류에 대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지원자격·요건,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방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6월)



## 사업대상자

- 시·군에 지방비 지원 가능 여부를 협의한 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6월)
  - 온실 설계유형에 따라 위탁설계형과 자가설계형으로 구분하여 신청
- 사업 신청 전 온실 신·개축 관련 인허가 등 사업시행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참여 농업인 및 지역민 의견수렴 등을 시·군과 협의 완료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수립(전년도 6월)
  - 평가방법·기준, 평가위원회 구성 등 서면검토 및 현장·대면평가 계획 수립
- 사업신청서·계획서 등 제반서류 검토를 통해 사업 참여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대면평가 대상자를 선정(전년도 8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안내(전년도 8월)
  - 평가방법·기준, 평가대상자별 현장·대면평가 일정 등 통지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개최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9월)

### 시·도,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수립·통지(전년도 8월)
-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참석·대응(전년도 8월)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9월)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참석·대응(전년도 8월)

## 한국농어촌공사

- 서면검토 및 현장·대면평가 시 기술자문, 평가보고서 작성 등 실시
  - 본사·지역본부 담당자 등으로 현장평가반을 편성하고, 현장평가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6월)

### 3. 착수 준비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 시·도, 시·군

- 시·도(시·군)은 사업자 선정 즉시 시설비·부대비 또는 민간자본보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등 적합한 비목으로 지방비를 편성
- 시·도(시·군)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위수탁계약 체결) 전 시설물 조성·운영계획, 재배품목, 생산량·수출량 등 기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 \* 사업예정지는 변경 불가(단, 외부요인으로 인한 부득이하게 변경 필요 시 증빙자료를 통해 사유 입증 가능하고, 변경 예정지를 기 확보한 경우 예외적으로 농식품부에 변경 승인 요청 가능)
    - 시설물 조성·운영계획 변경 승인 요청 전 한국농어촌공사에 변경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고, 변경 승인 요청 시 변경계획 적정성 검토서,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변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 전 시설물 조성·운영계획, 재배품목, 생산량·수출량 등 기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변경·승인 요청 시 사유를 명시한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변경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

- 사업대상자는 설계(위탁설계형) 또는 시공(자가설계형) 착수 전에 국고융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승인 확인서류를 발급받은 후 시·도(시·군)에 제출
  - 착수 후에는 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실적에 따라 발급하는 기성고(준공) 확인서에 의해 융자 대출 실행 요청

####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시·군)에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 의뢰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검토서 제출

###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교부(별지 제7호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하고,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 시·도, 시·군

- 시·도(시·군)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국고보조·융자금 교부 요청, 자금배정 및 융자한도배정 요구
- 시·도(시·군)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교부(별지 제7호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된 소요자금을 시·군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교부
- 시·군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시·군은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비율(국고·지방비)에 따라 환수 조치
  - \* 단,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시·군)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 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수행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자가 요청 시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식품부 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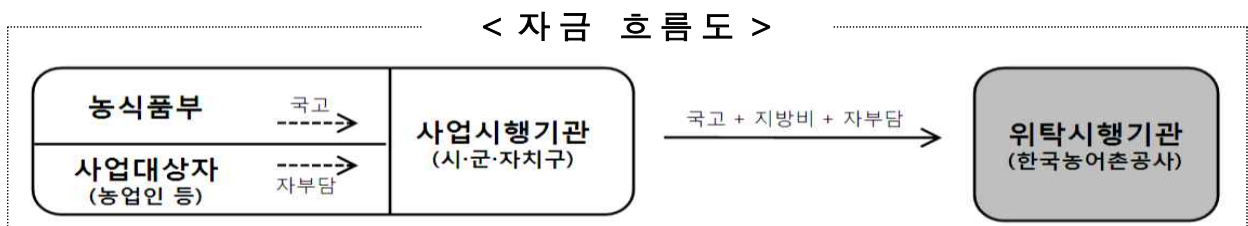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위탁시행자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식품부 요청 시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제출
- 위탁시행기관이 발급한 사업실적에 의한 기성고(준공) 확인서에 따라 융자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위탁시행기관으로 이체하여 집행

## 사업대상자

-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5. 사업 추진단계

- 기본방향: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시·군은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지방비, 농가에서 예치한 자부담분을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일괄 이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 사업 착수 시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에 따라 자부담을 선집행하고, 기성고에 따른 융자금과 보조금을 비율에 따라 집행
  - 1년차에 설계, 2년차에 온실시공
  - 자가설계형 신청자는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설계 실시



## 시·도, 시·군

- 사업대상자가 자가설계형으로 진행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11.30일까지)하고, 검토의견에 따른 설계도서 보완·수정사항 이행 완료 여부 확인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시·군에 계약대행을 요청하고, 시·군이 사업대상자를 대행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협약 체결
- 시·군은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국고, 지방비와 예치 받은 사업대상자의 자부담을 일괄 교부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 신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사항을 감독하고, 수시로 사업시행 점검 및 추진상황 보고 요청(분기별 1회 이상)
- 시·군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시설면적, 재배품목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 사업비 및 시설면적 변경 승인 요청 전 한국농어촌공사에 변경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고, 변경 승인 요청 시 변경계획 적정성 검토서,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변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제출
  - 기 확정된 사업비 내에서 발생하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군, 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변경·승인
- 시·도(시·군)는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 사유가 포함된 포기서를 제출 받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포기 발생 시 시·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해야 하며, 사업대상자에게는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안내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 준공완료 보고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른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결과(별지 제5호 서식) 및 사업추진결과를 시·도에 보고, 시·도는 해당 시·군의 정산결과 및 사업추진결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시·군)는 사업시행 기간 중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 공무원은 준공검사에 반드시 입회하여 확인

## 한국농어촌공사

- 시·군에서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시 기술검토위원회를 실시하여 설계적정성을 검토 후 시·군에 검토서 제출(자가설계형)
-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일괄 수탁하여 시행
  - 시·군으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설계도서 완성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사업 준공 후 해당 시·군에 준공 완료 보고
-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운영
  - 사업 위탁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실시설계(위탁설계형), 공사감리, 사업관리, 하자관리 담당
- 시·도(시·군)에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 의뢰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검토서 제출
- 예비준공검사 실시 후 시·군과 사업대상자에게 준공검사 입회 요청, 준공검사 실시 후 준공처리
- 설계·감리·사업관리비 요율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단위: %)

구 분	10억원이하	2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100억원이하
설계·감리 사업관리비	9.52	8.57	8.1	7.54	6.88

- \* 설계·사업관리비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비 수지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리비는 실시설계서의 공사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 대상액 중간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 설계·감리, 사업관리비 등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 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군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시·도(시·군)에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 의뢰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인 한계(최저한계)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 나. 업무 추진단계



### 다. 단계별 업무 내용

####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시·군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토지이용계획원 확인)
    - 사업예정지 입지조건 확인(주변 환경여건 등)
- \* 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군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 2-1) 설계 단계(위탁설계형)

- 온실 설계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작물 특성, 안전성, 실용성이 높은 시설로 유자격자\*에게 의뢰하여 시행
- \* 건축사 사무소 등록,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
- 자동화비닐온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에 의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 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 별표 1)” 이상의 시설을 설치



- 설계발주 시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격 요건을 갖춘 자와 계약을 체결
- 설계 완료 후에는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 위원회의 검토를 받음(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 농업인(농업법인)을 기술검토위원회에 입회하도록 통보
- 사업대상자인 농업인(농업법인)을 상대로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 2-2) 설계 단계(자가설계형)

- 시·군에서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시 기술검토위원회를 실시하여 설계 적정성을 검토 후 시·군에 검토서 제출

##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 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 4) 시공 단계

- 도급공사 시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 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 업체(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를 통해 시공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 기준에 의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의 여부확인(시공계획서 검토·확인, 시공상세도 승인, 현장시공 확인 및 검측,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등 공사감독업무지침에 따른 시공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 안전관리, 하도급 관리 및 기술자 배치 확인
-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 안전관리 의무,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어 기성검사 요청 시 기성검사원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기성검사 실시
  - 기성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 및 한국농어촌공사 공사 감독업무지침, 시설공사검사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함

###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준공검사 입회자: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 사업대상자(농업인 등) 및 시·군 담당자, 사업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시설·장비 이상 유무 확인 후 준공 정산

### 6) 하자관리 단계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지적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시공 등 조치
  -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의함
- 하자보수 공사 완료 시 검사 실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검사 실시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컨설팅 전담기관)

- 사업대상자가 희망 시 ICT 융복합 확산 컨설팅 추진
  - 컨설팅기관은 사업장별로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군, 위탁시행기관, 농업인 등에게 통보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 관리를 위한 계약대행 신청
- 사업대상 부지의 산지전용, 용도구역 변경 등 착공 전 인허가 사항은 사전 이행
- 자가설계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설계를 실시하고, 선정연도 12월 30일까지 설계적정성 검토 완료

-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자격자\*를 통해 실시설계도서 작성
    - \* 건축사사무소 등록,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
  -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의 설계도서(사업수지예산서,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제계산서, 수량산출서, 단가대비표 등) 일체를 작성
  - 비닐온실은 농촌진흥청의 내재해형 규격 검토 후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 시장·군수에게 설계도서 일체를 제출하여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설계적정성 여부 검토·승인
    - \* 설계적정성 검토는 11월 30일 이전에 시·군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하며, 설계적정성 검토의견에 따라 설계도서 보완 및 수정사항 이행
  - 실시설계와 함께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행정처리 이행
  - 시공사 선정 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불가하며, 특허(신기술) 적용 시 ‘건설신기술 협약’ 관련 규정\* 등을 활용하여 시장·군수와 특허(신기술) 권리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
    - \*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55호)」
- 필요시 공동 이용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운영
  -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시설면적, 재배품목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 변경 승인 요청 시 변경계획 적정성 검토서,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변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

## 5. 이행점검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시·군)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지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분기별로 사업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0일 이내 회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6. 사후관리단계**

**시·도, 시·군**

- 시·도(시·군)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군은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를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 온실(유리, 경질판, 비닐)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설비시설	준공일	7년	
■ 주요 기계·장비	납품일	5년	

- 시설물 등의 등기
  - 사업비를 지원한 시설물은 소유권 보존 부기등기 확인 후 정산
  - 시장·군수와 법인(단체)이 공동 투입한 경우는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 등기

- 시·군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용

###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2)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게 처분 승인 요청

### 제재 및 처벌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시·군)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식품부 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 시·도, 시·군

- 시·군은 사업대상자 선정·통지 이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
  - \* (위탁설계형) 위수탁협약 체결 및 설계사 선정 / (자가설계형) 설계사 선정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회계연도 내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지속 추진
- 시·군은 유예기간 종료 이후 의무수출비율 불이행 시 해당 사업자에게 수출 물류비 지원 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하고, 7년 내 3년 연속 불이행 시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용자금 상환 조치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며,
  -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 사업수행자(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 농협은행(농·축협)

- 대출취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중도회수 개시일을 시·군 등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의 명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한 경우 사업 착수 가능시기를 명시한 소명자료를 시·군에 제출

\* (위탁설계형) 위수탁협약 체결 및 설계사 선정 / (자가설계형) 설계사 선정

### 6. 성과측정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지표(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IV. 2022~2023년도 사업(공모)계획

### 1. 2022~2023년도 사업계획

- 2022~2023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공모계획 알림('21.3)

### 2. 2022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안내(추후 통지)

※ '22년도 사업추진 일정은 '20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통보

## 제출자료 작성요령

- 제안서는 본 양식을 기본으로 해당 지역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작성
  - 가능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항목 추가 가능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시·군 내부자료 등 실제 조사 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출처 명기 후 첨부
- 사업추진계획은 사실에 입각하여 실현가능한 사항을 작성하며,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부처별로 구분 작성하며, 조감도, 배치도(또는 자료사진) 등 사업조성 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예정지가 사업 적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
  - 관련사업 연계계획 등의 세부추진계획은 부록으로 붙임
- 세부추진 일정은 상세히 작성
  - 관련법령 인허가 및 협의, 설계 발주 및 실시설계, 공사 발주 및 시공·준공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제안서는 A4용지 양면을 활용하고, 좌측 편철하여 13부 제출
  - 참고 사진은 컬러출력·인쇄(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 흑백가능), 단, 지형도 등 도면은 원도를 기준으로 하며, 축척을 표기
- 참고·증빙자료(사업 참여요건 증빙자료, 구비서류 등) 일체는 별첨으로 작성
- 쪽 수(page) 기재
- 사업계획서는 한글과 파워포인트 양식 모두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서면검토용 한글파일과 발표용 PPT 각각 작성 제출
- 작성양식
  - 한글 : 본문 12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 파워포인트 : 20~30분 이내 발표 가능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





## 구 비 서 류

유의 사항

○ 신청 농가별로 구비서류를 작성, 농업법인 또는 신청자 대표가 취합하여 제출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신용조사 증빙자료 1부

- ① 신용조사서 1부
- ② 고객종합정보조회서(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기금액 기재) 1부
- ③ 예탁금 잔액증명서 1부

3. 사업비 수지예산서 1부
4. 사업신청 부지 소유 여부

소유	임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li> <li>②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li> <li>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li> <li>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li> </ol>

5.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관련 서류

-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 ③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 ④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업법인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APC·농협·농업법인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출하약정 계약서 사본 각 1부
7. 수출참여 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한 금액을 증명할 수 매출증명서 사본 및 수출참여 기간 동안의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각 1부
8. 기존 온실 경작을 하고 있는 사업신청자의 경우 온실 경작사실 확인서 1부

##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변경)계획서

### I. 사업개요

#### 1.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사업목적

#### 2. 주요내용

- 사업명:
- 위치:           시·도           시·군·자치구           읍·면           동·리
- 면적:           m<sup>2</sup>(매입 :           m<sup>2</sup>(           %), 임대 :           m<sup>2</sup>(           %))
- 총사업비:           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합계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 사업기간 :
- 시설물 조성계획

구분	세부내용	비고
스마트팜 온실		품목별 면적 등
냉난방시설		
기타		

### II. 사업 추진여건 분석

#### 1. 지역의 시설농업 주요현황(시·군 단위)

- 생산자 현황

연도	합계		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생산자수	%	농가수	%	법인수	%	단체수	%
2020								

- 시설유형 현황 (단위: ha)

연도	계		유리온실		비닐온실		기타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2020								

주요 품목 현황

(단위: ha)

연도	계		00		000		000		기타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2020										

## 2. 사업예정지 토지 현황

토지이용현황

구분	계	전	답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면적(m <sup>2</sup> )								
구성비(%)								

용도지역 현황

구분	합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소계	계획관리	생산·보전관리	계	(농업진흥지역)	
면적(m <sup>2</sup> )							( )	
구성비(%)							( )	

○ 도시계획 수립여부 :

○ 용도지구·구역 지정여부 :

○ 기타 관련계획 저촉여부 :

\*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안 된 경우, 관리지역 소계만 표기

\* 사업예정지 내 대표위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상, 하, 좌, 우, 중앙 5필지)

토지 확보 현황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m <sup>2</sup> )		지역지구	소유권 현황	매입/임대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적	편입			
1	00	천0	성0	신0	123	답	42,000	22,000	농림	00군	○
2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
3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
4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
합계							70,000	60,000			

## 3. 사업예정지 입지분석

현장여건 및 입지조건

○ 접근성 및 도로현황 등

\* 국내시장에 출하 또는 수출 시 물류 수송 교통여건 등 고려하여 기재

○ 용수 확보, 전기 인입 등 SOC 여건

- 기후조건에 따른 시설재배 환경 분석
  - 일조량, 적설심, 풍속, 온·습도 등
    - \*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에서 제공하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의 자료 활용
- 사업 추진 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부지정지 및 지내력 확보 및 계획
  - 민원발생 가능성 및 해소방안

#### 4. 사업대상지역 재정여건(시·군 단위)

- 지자체 재정 자립도 현황
- 시설원예분야 예산편성 내역(최근 5년간 예산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원예시설현대화 (농식품부)										
0000 (세종시)										

\* 농식품부 추진 사업과 시·도 또는 시·군 자체사업 모두 기재

#### 5. 관련 법규 검토결과

- 법·제도 개발제한 사항 등에 대한 현황
  -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첨부
  - \*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 가설건축물 신고·등기 등 관련 인허가 또는 개발제한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관련 법령·조례 내용, 지자체 공문 등 증빙자료로 제출)
-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계획
  - \* 인허가 취득 계획, 제한요소 극복방안 등 제시(관련 법령·조례 내용, 지자체 공문 등 증빙자료로 제출)

### Ⅲ. 사업추진 세부계획

#### 1. 추진배경

#### 2. 목표 및 전략

- 목표
  - \*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시·군 발전계획 등 지역의 다른 관련계획이 있을 경우 참고하여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

추진전략

### 3. 시설물 조성계획

스마트팜 온실

- \* 수출을 위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 고려
- \* 조성규모(면적, 축고·동고), 시설의 유형(유리 또는 비닐), 형태(연동 또는 단동), 설치되는 주요 시설·장비, 온실 특성(반밀폐형 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냉난방시설

- \* 온실규모를 감안하여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감시설 등 구체적인 시설의 종류와 규모, 확보계획 수립

기타시설

- \* 양액 재활용시설 등 부수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시설·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4. 생산 및 유통계획

생산 및 판매 실적·계획(요약)

○ 품목 1

구분	연도	품목명 (품종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달러)	주요 판매처***
생산	실적*	2018				
		2019				
		2020				
	계획	2022				
		2023				
		2024				
내수	실적	2018				○○마트(00%), ○○도매시장(00%), 직거래(00%) 등
		2019				"
		2020				"
	계획	2022				"
		2023				"
		2024				"
수출	실적**	2018				국가명-○○마트(00%), ○○백화점(00%), ○○업체(00%)
		2019				
		2020				
	계획	2022				일본-○○마트(00%), ○○백화점(00%), ○○업체(00%)
		2023				
		2024				
수출비율(%)	2022			%	%	
	2023			%	%	
	2024			%	%	

\* 생산실적: 연간 판매된 물량과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과거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장 등)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 주요 판매처별 비율은 물량 또는 금액 단일 기준으로 작성

○ 품목 2

구분	연도	품목명 (품종명)	재배면적 (m <sup>2</sup>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달러)	주요 판매처***
생산	실적*	2018				
		2019				
		2020				
	계획	2022				
		2023				
		2024				
내수	실적	2018				○○마트(00%), ○○도매시장(00%), 직거래(00%) 등
		2019				"
		2020				"
	계획	2022				"
		2023				"
		2024				"
수출	실적**	2018				국가명-○○마트(00%), ○○백화점(00%), ○○업체(00%)
		2019				
		2020				
	계획	2022				일본-○○마트(00%), ○○백화점(00%), ○○업체(00%)
		2023				
		2024				
수출비율(%)	2022			%	%	
	2023			%	%	
	2024			%	%	

\* 생산실적: 연간 판매된 물량과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과거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장 등)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 주요 판매처별 비율은 물량 또는 금액 단일 기준으로 작성(기준 제시)

생산실적 및 계획

○ 실적(품목별로 작성)

○계획(품목별로 작성)

\* 재배시설의 생산성, 사업대상자의 기술력, 기후조건 등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생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국내유통실적 및 계획

○ 실적(품목별로 작성)

○계획(품목별로 작성)

\* 재배품목의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국내 유통·판로확보 계획 및 방안 수립

\* 생산물량에 대한 도매시장, 조공법인, 산지농협에의 출하·판매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출하약정 또는 가계약서, MOU, 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수출실적 및 계획

- 실적(품목별로 작성)
- 계획(품목별로 작성)
  - \* 수출물량 생산·관리 계획(수출대상국 요구 크기, 품질, 안전성 등 확보 계획 등)
  - \* 수출대상국, 수출경로, 예상 소비자, 수출가격(잠정치)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
  - \* 유예기간(3년) 포함 의무수출비율 이행계획을 제시(지속적 수출확대, 바이어 확보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국내수출업체 또는 해외 수입업체와 수출약정서, 계약서, 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5. 추진일정

- \* 관련 인허가 처리계획, 설계(위탁설계형) 발주 및 실시설계, 공사 발주 및 시공·준공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 추가)

IV. 사업비 조달계획

1. 추정사업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비율(%)	산출내역			
합계		100.0				
◦ 기초공사(부지정지, 성토 등)						
◦ 건축공사			m <sup>2</sup>	×		천원
◦ 기계공사			m <sup>2</sup>	×		천원
◦ 전기공사			m <sup>2</sup>	×		천원
◦ 설계비						
◦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 기타비용						

- \* 기타비용: 한전납입금, 기타부대비 등
- \* 위탁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는 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한 요율 적용

재원별 소요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요 사업비		합계
	'22년(설계비)	'23년(시공비)	
합계			
국고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 2. 소요자원 확보계획

### 재산현황

#### ○ 자산보유 및 부채현황

\* 신용조사서 및 관련 증빙자료(자부담 확보 증명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금액이 기재된 고객종합정보 조회서, 예탁금 잔액증명서(단, 예탁금 다수일 경우 발급일자 동일) 등) 제출

#### ○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	추정가격(백만원)		소재지	비고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토지대장 등 증빙 첨부

### 사업비 확보계획

#### ○ 지방비(지자체에서 작성)

\* 본예산 또는 추경 편성계획 제시(구체적인 시기 포함)

#### ○ 자부담 및 국고용자

\* 국고용자금(대출실행방법), 자부담 확보 등 소요재원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예시: 모태펀드 유치, 자본금 활용, 담보 또는 신용대출 실행계획 등)

## V. 지역활성화 계획

### 지역 사회에의 기여방안

\* 생산자 조직화, 유통 규모화, 시설물을 활용계획(예시: 농업인, 청년 등의 교육·훈련, 농촌관광 등) 제시

### 지역인력 채용계획

## VI. 기대효과

※ 필요 시 위치평면도, 예정지 전경, 항공·위성사진, 편입용지 지번별 조서, 편입용지도 등도 추가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사업명	스마트팜 온실신축			
	변경요청시점	<input type="checkbox"/> 사업 착수 전, <input type="checkbox"/> 사업 착수 후			
	유 형	<input type="checkbox"/> 농업인, <input type="checkbox"/> 농업법인,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재배규모	(㎡)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에 분야 지원사업 변경신청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현장평가 보고서

### 기본현황

시도명	시군명	사업자명	사업예정지		지목
신청내용(온실유형)			부지면적(m <sup>2</sup> )	온실면적(m <sup>2</sup> )	재배품목
□유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철골비닐					
용도지구·구역			토지소유주	사업비(백만원)	사업자형태

### 입지현황

도로현황	항공사진
예정부지 전경	진입로 전경

현장 여건(조사반 의견)

○

○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결과		
법·제도적 제약요인 검토	- 사업대상지 위치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대장	토지대장 면적(계획서)	계획서 부지면적 (온실면적-관리등 포함)	
	- 토지소유주 구분			
	- 인허가 가능여부			
	- 도시계획 수립여부 등			
	- 용도지역 현황			
	- 진입도로 대지경계 높아차 등			

대상지 입지조건	- 기후(2017기준) · 평균기온 : 14.5°C · 일조시간 : 2,722hr · 강 수 량 : 671.4mm · 풍 속 : 2.2m/s · 적 설 량 : 10.5cm	
	- 지반상태 · 성토, 진입도로 적정성 등 여부	-
대상지의 적정성	- 온실 및 부설시설의 배치적정 여부	
	- 상하수도 등 용수확보 가능 여부	
	- 전기(통신) 인입 가능 여부	
	- 기타	
에너지공급	- 폐열 지열이용 가능 여부 - LNG 가스 이용 등	
물류 및 지리적 접근용이성	- 항만, 공항 등 인접 등 수출여건 - 고속도로, 국도·지방도 등 교통여건	
수출 활성화 방안	- 작물에 따른 규모 설정여부 - 수출계약 및 공동작업장 활용여부	-
단지확대 가능여부	- 인근부지 등을 활용한 단지확대 가능여부	
민원 가능성	- 민원 발생 관련 인근 주변 마을 주민의 의견 등 청취 - 인근 주변 온실의 피해 사례 등 청취	





##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보조사업자)

1.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00%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 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 다.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사. 사업시행지침서를 위반하는 경우
- 아. 의무수출비율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 년    ○ ○ 월    ○ ○ 일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